
계정과목해설서

2011. 12.

국가회계기준센터

3종 지침서 활용방법

□ 3종 지침서의 구성

- (업무매뉴얼) dBrain 상 업무처리과정을 설명하고, 업무 처리 시 적정한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재무결산 관점에서 유의점 서술
- (오류사례집) '09, '10회계연도 재무결산 간 발생한 오류에 대하여 사례별로 서술하고 처리방법 또는 유의사항 제시
- (계정과목해설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계정과목에 대한 해설과 관련 기준 및 지침 등 서술

□ 3종 지침서 활용 사례

[사례 1.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사무용집기 구입(업무담당자)]

- ① 업무매뉴얼(제5장 2절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을 참고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방법 및 관련 법령, 지침 등 숙지
- ② 오류사례집(제2장 물품의 취득)을 통하여 물품 취득 업무 관련 오류사례 숙지로 올바른 업무처리 수행
- ③ 업무매뉴얼과 오류사례집 활용 중 재무계정과목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 계정과목해설서의 인덱스를 이용하여 검색

[사례 2. 결산 시 합계잔액시산표 점검(결산담당자)]

- ① 합계잔액시산표 점검 시 의문점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하여 계정과목해설서를 이용하여 확인
- ② 계정과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업무매뉴얼 및 오류사례집 검토를 통하여 오류 발생 원인 파악
- ③ 해당 오류가 생성된 이유를 해당 일선관서에 전파하여 정정

□ 3종 지침서 세부 구성

지침서	구 분	주요내용
업무매뉴얼	제1장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취득 및 원리금 회수
	제2장 미수채권	미수채권의 발생, 소멸 및 평가
	제3장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처분 및 평가
	제4장 대여금	대여금 지출, 회수 및 용자보조원기충당금 설정
	제5장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의 취득, 관리전환, 운용, 처분
	제6장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
	제7장 리 스	리스의 발생과 상환
오류사례집	제1장 지 출	세부항목의 선택, 부대비 설정 등
	제2장 물품의 취득	구매요청서 작성, 부대비 배부 등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계약종류, 부대공사, 부대비 정산 등
	제4장 국유재산, 물품의 처분	매각, 대부 및 사용허가
	제5장 수 입	거래처 선택 및 세부항목 선택 등
	제6장 리 스	구매요청서 및 리스대금청구 등
계정과목 해설서	제1장 개 요	각 계정과목별 해설 및 계정과목 관련 법령, 유의사항 등
	제2장 자 산	
	제3장 부 채	
	제4장 순자산	
	제5장 수 익	
	제6장 비 용	
	제7장 국세징수	

목차

계정과목해설서

제1장. 개 요	1
제2장. 자 산	5
제3장. 부 채	89
제4장. 순자산	123
제5장. 수 익	149
제6장. 비 용	199
제7장. 국세징수	255



제 1 장
개 요

1. 국가회계기준의 의의

국가회계기준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가회계법 제 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다.

2. 발생주의

발생주의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기록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는 외상 구매 시 거래를 기록하지만, 현금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는 외상을 현금으로 갚을 때 거래를 기록하게 된다.

3. 복식부기

복식부기란 거래 발생 시 동시에 기록을 두 번(차변과 대변)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기록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는 현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결과 자산(자동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록하게 되지만, 단식부기는 현금 지출만을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복식부기는 자산을 명칭별로 분류하고 기록하므로 자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단식부기의 경우에는 자산대장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는 한 현금출납기록을 일일이 파악하여 자산현황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유사하며, 재정상태표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연도별로 파악할 수 있다.

재정운영표는 일정기간의 수익, 비용의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특히 프로그램별 원가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자본변동표와 유사하다.

이외 필수보충정보로 공시되는 국세징수활동표가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국세징수활동을 하는 부처인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만 발행한다.

5. 재무계정과목 체계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재무계정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정과목은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및 세부관리과목의 5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는 회계과목(Level III)까지 공시되고, 회계처리는 주로 관리과목(Level IV) 또는 세부관리과목(Level V)으로 이루어진다.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공시과목)	(세부)관리과목(기표과목)
자산 등 5개 대분류	유동자산 등 25개 중분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183개 회계과목	현금및현금등가물 등 954개 (세부)관리과목

대분류(Level I)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을 다음과 같이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 비용 및 국세징수 7가지로 세부 구분하며, 본 해설서에는 각 장으로 구분되어 설명하고 있다.

6. 계정과목해설서 활용방법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는 예산과목에 대하여 세목과 세부·세세부항목이 연계되어(Mapping) 재무계정과목이 생성된다. 따라서 생성된 또는 생성될 재무계정과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 해설서를 통하여 해당 계정과목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

각 대분류를 기준으로 장(章)으로 구분되어 있고, 중분류를 중심으로 각 계정과목의 정의 및 세부설명을 담고 있으며, 유의점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담고 있다. 또한 설명 및 해설부분에 언급되는 법령 등을 추가하여 해설서의 이해를 돕게 했다.

제 2 장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10
II. 장 · 단기금융상품	16
III. 장 · 단기투자증권	18
IV. 장 · 단기미수채권	27
V. 장 · 단기 대여금	35
VI. 기타유동자산	41
VII. 기타투자자산	49
VIII. 일반유형자산	50
IX. 사회기반시설	57
X. 무형자산	74
XI. 유산자산	78
XII.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84

1. 자산의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제9조에 의하면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2. 자산의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 제10조에 의하면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 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3. 자산의 구분

국가회계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각각의 회계과목에 대한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한다.

회계과목	관리과목	설명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기타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투자 혹은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

회계과목	관리과목	설 명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하고 있는 자산
일반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무형자산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장기미수채권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등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

4. 국가자산의 개별법상 분류체계

국가회계기준 자산과 관련된 개별법에는 크게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이 있다.

① 국유재산법 상의 구분

- (1)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이 해당된다.
- (2) 행정재산 :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국가 고유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보존하는 자산이다.
 - ①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②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③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사회기반시설 자산과 공공용 기타로 구분)
 - ④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② 물품관리법 상의 구분

- (1) 물품관리법 적용 대상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다.
- (2) 물품관리법 제49조에 따라 법 적용을 일부 배제할 수 있는 물품은 서화, 예술작품,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불용품 중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등이 해당된다.

③ 국가채권관리법의 구분

- (1) 국가채권관리법 제 2조에 따라 국채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 정의한다.
- (2) 국가채권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채권은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기부금에 관한 채권,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등이 해당된다.

I.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정의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및 국고금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현금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을 의미한다. 통화는 지폐 및 주화 등을 포함하며, 통화대용증권은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 기일도래 공사채이자표 및 배당금 지급통지표 등을 포함한다.

현금성자산은 국고금을 포함한, 보통예금 등의 예금 및 현금등가물을 의미한다. 현금등가물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다.

국고금은 「국고금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산을 의미한다. 국고금은 그 운용실태와 규모를 구분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현금및현금등가물과 구분하여 국고금의 관리과목으로 구분 표시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국고금제외)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
		국고금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은행국가예금
			현금성자산
			국고예금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등가물(국고금제외)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국고금을 제외한 자산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이하 '민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 여유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통화대용증권 및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의미한다. 현금및현금등가물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 ① 현금 : 기말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시재액 등
- ② 보통예금 : 예입과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으로 예금거래의 대상, 금액, 기간 등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가입 및 해지, 거래가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
- ③ 당좌예금 : 금전의 수불이 빈번하거나 현금의 보관이나 출납의 번거로움과 위험성을 은행에 맡기기 위하여 별도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요구불 예금으로, 현금출납을 은행이 대행하므로 사용자에게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
- ④ 기타현금성자산 :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금성자산으로서, 취득당시 만기 3개월 이내 조건을 충족한 수익증권, 금융상품 등을 포함

(2) 국고금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1항2호의 기금에 납입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일시차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조달된 자금, 또는 국고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 ① 한국은행국가예금 :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국고금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통합계정, 기업특별회계계정,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계정,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계정을 포함
- ② 금고은행국가예금 : 「국고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경우, 동 사무에 의해 수납된 자금

- ③ 현금성자산 : 현금이외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보유액으로 금 등을 포함
- ④ 국고예금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 영경비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에 예치된 금액
- ⑤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 국고금여유자금운용계정 내 세부운용계정 및 수익계정 상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을 위하여 예탁하거나 취득한 금융자산(현금예금 및 미수수익 등 제외)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는 표시되지 아니하며, 기말시점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시 표시됨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분류 시 유의사항

- (1) 타인발행차용증서, 수입인지, 부도어음, 부도수표 등은 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각각 대여금, 소모품, 부도어음 등으로 분류한다.
- (2)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만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예금 등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 (3)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중 차입담보계약, 관련 법 또는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특정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만기 구분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다만, 국고금의 경우, 사용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국고금으로 분류한다.

② 기타현금성자산의 인식요건

- (1) 수익증권 및 금융자산 중 큰 거래비용이 없이 확정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기타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기타현금성 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취득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②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 ③ 취득당시 3개월 이내 환매조건의 환매채
 - ④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
 - ⑤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단기 금융상품 등
- (2) 취득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임에 따라 기타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 평가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며, 미수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다.
- (3)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정상태표일 현재기준이 아니라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 인식시 유의 사항

국고금의 여유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하는 정기 예·적금 등의 장·단기금융상품과 단기투자증권 및 장기투자증권, 회사채발행 및 유통 지원금 등은 국고금회계의 '국고금여유자금운용계정'에서 장·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 해당되는 계정과목으로 각각 처리하되,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며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과목의 세부 운용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④ 현금및현금성자산 관련 외화평가

외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잔액으로 한다. 이때,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4. 관련 법령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②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적용한다.

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입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마다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은 예금의 출납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Ⅱ. 장 · 단기금융상품

1. 장 · 단기금융상품 정의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서 장 · 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 정기적금,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유동자산	단기금융상품	정기에금	-
		정기적금	-
		기타의단기금융상품	-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정기에금	-
		정기적금	-
		기타의장기금융상품	-

Ⅰ 장 · 단기금융상품

(1) 정기에금

일정기간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와 함께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제도이다.

(2) 정기적금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일정이율의 이자와 함께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이다.

(3) 기타의 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어음관리구좌 또는 자산관리계좌(CMA), 신중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MMT), 특정금전신탁, (지역발전)예탁금, CDM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장·단기 구분 및 유동성 대체

- (1) 금융상품의 장·단기 구분은 금융상품의 만기도래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 또는 1년 이후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2) 취득 시 만기도래시기가 1년 이후임에 따라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더라도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단기 금융상품으로 계정 대체한다.

②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으로 취득한 정기 예·적금 인식 시 유의사항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으로 취득하는 정기 예·적금의 경우 기중에는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기말시점에 현금및현금등가물 중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③ 장·단기금융상품 외화평가

외화금융상품은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므로 잔액에 대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잔액으로 한다. 이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외화평가손실" 및 "외화평가이익"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 비배분 비용의 외화평가손실, 비배분수익의 외화평가이익)

Ⅲ. 장 · 단기투자증권

1. 장 · 단기투자증권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면 단기투자증권은 유동자산의 하위 회계과목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을 말한다. 장기투자증권은 투자자산의 하위 회계과목으로, 만기가 1년 후이거나 1년 후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기투자증권을 말한다.

장 · 단기투자증권의 회계과목 내에서는 보유목적 및 자산의 성격에 따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기타 장 · 단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한다. 장 · 단기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참고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유동자산	단기투자증권	채무증권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지분증권	주식
			기타지분증권
	기타 단기투자증권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주식			
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	채무증권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지분증권	주식
			출자금
	기타 장기투자증권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주식	
		출자금	
		기타지분증권	
		기타지분증권	

Ⅰ 장 · 단기투자증권

(1) 채무증권

국가회계실체가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가 필요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중,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가 필요하여 취득한 것”의 의미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유가증권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법령에서 국가회계실체가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여 취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고금여유자금운용계정에서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한 채무증권은 국가통합 재정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국고금의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으로 분류한다.

국가회계실체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채무증권을 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재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채 또는 공채를 발행한 국가회계실체가 매입소각의 목적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장·단기투자증권의 채무증권이 아니며, 부채의 차감항목인 자기국채 또는 자기공채이다. 자금운용목적 등으로 재취득한 채무증권(국채 또는 공채)은 국가통합채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만 자기국채 또는 자기공채로 분류한다. 한편, 국고금여유자금운용계정에서 자금운용 목적으로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공채를 재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가 국고금에 포함되므로 국가통합채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도 부채의 차감항목이 아니며,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국고금의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으로 분류한다.

채무증권은 다음과 같이 국채, 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로 구분한다.

- ① 국채 :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국채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발행한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음
- ② 공채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채무증 국채와 지방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중소기업진흥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음

- ③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발행한 채무증권

※ 지방채증권이 아닌 지방채는 증서차입 형태로 발행하며, 이 경우 유가증권인 채무증권이 발행되지 않음. 따라서 국가회계실체 입장에서는 정부외장·단기대여금(장·단기융자금)으로 회계처리

- ④ 회사채 :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상법」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권

(2) 지분증권

국가회계실체가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가 필요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하며,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지분증권은 주식, 출자금, 기타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 ① 주식 : 자본을 구성하며 주주의 권리를 표명하는 지분증권
- ② 출자금 :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 등에 의해 출자하여 취득한 지분증권으로, 장기투자증권에 포함
- ③ 기타지분증권 : 주식 및 출자금을 제외한 지분증권으로, 수익증권, 자산유동화출자증권,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지분증권 등을 포함

(3) 기타 장·단기투자증권

국가회계실체가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 및 정책적 목적에 의해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가 필요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 채무자와의 협의, 채권자 상호간의 협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다음의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이 기타 단기투자증권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른 국세 물납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의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의 채권이 출자 전환되어 취득
하는 지분증권이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의 대표적인 예이다.

- ① 국채
- ② 공채
- ③ 지방채
- ④ 회사채
- ⑤ 주식
- ⑥ 출자금
- ⑦ 기타지분증권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장·단기 구분 및 유동성 대체

- (1) 투자증권의 장·단기의 구분은 만기도래 또는 처분예정시기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 또는 1년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2) 취득시점의 잔여만기가 1년을 초과하거나 처분예정시기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더라도,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 또는 처분예정시기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을 단기투자증권의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②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으로 취득한 장·단기투자증권 인식 시 유의사항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으로 취득하는 투자증권의 경우, 기중에는 해당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되,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국고금여유자금 운용액'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③ 취득원가의 측정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④ 취득일 이후의 평가

- (1)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지분증권과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자목적의 장·단기투자증권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투자증권의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 상 조정항목으로 표시한다.
- (3) 공정가액이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증가(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증가)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 다만, 채무증권은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의하여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5 감액손실의 인식 및 환입

- (1)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한다. 감액손실 금액은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 (2) 감액한 장·단기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 (3)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재정운영표상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 (4) 장·단기투자증권 중 채무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당해 시점부터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을 중지한다. 이후 감액손실이 환입되어 채무증권의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되었을 채무증권의 장부가액(상각후취득원가)까지 회복된 경우 당해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한다.

4.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후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국채법]

제3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特別計定)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를 발행한다.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채는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매입)하게 하거나 현금 지급을 갈음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그 국채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償還) 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의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후략>

IV. 장 · 단기 미수채권

1. 미수채권 및 장기미수채권 정의

「재정상태표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회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을 미수채권이라 하고 회수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권을 장기미수채권이라 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유동자산	미수채권	미수국세	-	
		미수부담금수익	-	
		미수제재금수익	-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	
		미수사회보험수익	-	
		미수연금수익	-	
		미수보험수익	-	
		미수보증수익	-	
		미수이자수익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미수채권이자수익	
			미수대여금이자수익	
			미수기타이자수익	
	미수기타수익	-		
	기타의미수금	-		
	미수채권 현재가치할인 차금	미수국세현재가치할인차금	-	
		미수부담금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미수제재금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미수사회보험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미수연금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미수보험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미수보증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미수기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기타의미수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미수국세대손충당금	-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	-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	-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대손충당금	-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	-	
		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	-	
		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	-	
		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	-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대손충당금	
			미수채권이자수익 대손충당금	
	미수대여금이자수익 대손충당금			
	미수기타이자수익 대손충당금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	-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
기타비유동 자산	장기미수채권	장기미수국세	-	
		장기미수부담금수익	-	
		장기미수제재금수익	-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	
		장기미수사회보험수익	-	
		장기미수연금수익	-	
		장기미수보험수익	-	
		장기미수보증수익	-	
		장기미수이자수익	장기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장기미수채권이자수익	
			장기미수대여금이자수익	
			장기기타이자수익	
				장기미수기타수익
		장기기타의미수금	-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장기미수채권 현재가치할인 차금	장기미수국세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미수부담금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미수제재금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미수사회보험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미수연금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미수보험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미수보증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미수기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기타의미수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장기미수국세대손충당금	-	
		장기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	-	
		장기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	-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대손충당금	-	
		장기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	-	
		장기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	-	
		장기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	-	
		장기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	-	
		장기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	장기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대손충당금	
			장기미수채권이자수익 대손충당금	
			장기미수대여금이자수익 대손충당금	
			장기미수기타이자수익 대손충당금	
장기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	-			
장기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			

① (장기)미수채권

(1) (장기)미수국세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을 말한다. (☞ 국세징수의 국세수익)

(2) (장기)미수부담금수익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조세성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을 말한다. (☞ 비교환수익의 부담금수익)

(3) (장기)미수제재금수익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벌금, 몰수금 등의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을 말한다. (☞ 비교환수익의 제재금수익)

(4)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병원수입, 교도소수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면허료 및 수수료, 국립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입 및 공업용수 사용료, 실습수입(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등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재화 및 용역 제공수익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으로 용역제공의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재화및용역제공수익)

(5) (장기)미수사회보험수익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사회보험수익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비교환수익의 사회보험수익)

(6) (장기)미수연금수익

공무원연금수익, 군인연금수익, 사학연금수익과 국민연금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프로그램수익의 연금수익)

(7) (장기)미수보험수익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험료수입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프로그램수익의 보험수익)

(8) (장기)미수보증수익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수입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프로그램수익의 보증수익)

(9) (장기)미수이자수익

금융상품, 채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하여 산정한 기간 경과분 미수수익 및 수취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취하지 못한 이자수익 금액을 말한다. (☞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이자수익)

- ①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 ② 미수채권이자수익 :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 ③ 미수대여금이자수익 :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 ④ 미수기타이자수익 : ① ~ ③ 외 기타자산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10) (장기)미수기타수익

배당금수익, 법인세환급금, 신탁사업수익 등 기타수익에 대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기타수익)

(11) (장기)기타의미수금

일반유형자산 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매각대금, 미수금을 비롯하여 자금거래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채권 중 미수한 금액을 말한다.

② 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유동성대체된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미수채권의 차감계정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③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미수채권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금액을 의미한다.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미수채권의 차감계정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국가회계기준은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장기미수채권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장기미수채권을 현재가치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이라고 하며, 당해 채권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이때 할인율은 그 거래에 내재된 이자율 즉,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④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회수가 불확실한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의미한다.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의 차감계정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국가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래의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같은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충당금법'을 따르고 있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미수채권 내 미수금 및 미수수익 계정의 구분

일반유형자산 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미수된 금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기타수익과 관련하여 미수된 금액은 기간경과분에 대한 수익인식분을 포함하여 미수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유동성 대체

- (1) 미수채권은 회수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 회수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유동자산의 미수채권으로 분류하고 회수일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비유동자산의 장기미수채권으로 분류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해당 장기미수채권의 회수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유동성 대체를 통하여 유동자산의 미수채권으로 회계처리한다.
- (2)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가 가능하여 장기미수채권에서 미수채권으로 유동성 대체된 금액과 관련된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은 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유동성 대체한다.
- (3) 유동성 대체하는 장기미수채권과 관련한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또한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현재가치평가

- (1) 현재가치평가는 거래발생 시 또는 계약조건 변경 시에 한하여 적용하며, 현재가치로 평가한 이후 유효이자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에 상각한다.

④ 대손충당금 평가방법

- (1) 대손충당금은 기말 결산시점에 기말 채권잔액 중 기간경과분석, 거래처별 신용 및 재무상태분석, 과거경험율을 토대로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 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

하여 추가로 설정하고, 반대로 결산전 대손충당금잔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대손충당금환입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차액을 환입한다.

- (2) 기말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및 대손실적률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대손율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령분석법 또는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며, 대손율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실적률법을 사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할 수 있다.

※ 연령분석법 :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

※ 채권잔액비례법 :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

※ 대손실적률법 : 채권에 대한 과거 결손추정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예) 과거 3년간 채권의 평균 결손율

- (3) 대손추산액의 평가기준은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하여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장기미수채권의 유동성대체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외화미수채권의 경우 외화평가 후 잔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한다.

V. 장 · 단기대여금

1. 장 · 단기대여금 정의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서 대여금이란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이다.

대여금을 제공하는 기관의 정부기관 소속여부에 따라 정부내대여금 및 정부외대여금으로 분류하고, 대여금으로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에 따라 전대차관대여금, 예탁금 및 용자금으로 나눈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유동자산	단기대여금	정부내단기대여금	단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단기예탁금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정부외단기대여금	단기전대차관대여금
			단기용자금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단기용자금대손충당금	-
		단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	-
	장기대여금	정부내장기대여금	장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장기예탁금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정부외장기대여금	장기전대차관대여금	
		장기용자금	
	장기용자금대손충당금	-	
	장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	-	

Ⅰ 장 · 단기대여금

(1) 정부내대여금

정부내 타부처의 회계 · 기금 간에 유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 전대차관대여금 및 정부내예탁금으로 구분한다.

- ① 전대차관대여금 :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결제자금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하는 외화자금(계정분류상 “해외차입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정부내 타회계에 대여한 자금이다.
- ② 정부내예탁금 : 정부 부처내 타회계 또는 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정부내 예탁금은 타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이전지출’과는 별도의 항목이며, 이는 유·무상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정부내예탁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일반회계 예탁금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특별회계 예탁금 : 일반회계나 기금 또는 특별회계가 특정 특별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금 예탁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에서 특정 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2) 정부외대여금

정부외 기관에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 전대차관대여금 및 장기융자금으로 구분한다.

- ① 전대차관대여금 :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결제자금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하는 외화자금(계정분류상 “해외차입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국가회계실체외** 기금,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및 기타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한 채권이다.
- ② 융자금 : 국가회계실체 외인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 중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채권이다.

융자금은 제공하는 대상에 따라 공공기관 융자금,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기타 민간융자금 및 자치단체 융자금으로 구분한다. 융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융자금 : 중앙정부부문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부문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부문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타 민간융자금 : 공공부문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타 민간분

아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자치단체 융자금 : 중앙정부부문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중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지방채증권이 아닌 것(증서차입 지방채)을 포함

② 대여금대손충당금

(1) 융자금대손충당금

국가회계실체가 시장이자율 이상의 이자율로 실행한 융자금 중 회수가 불확실할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이다.

(2) 융자보조원가충당금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실행한 융자금의 원금과 융자금 추정 회수가능가액의 순현재가치와의 차액이다.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부터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또한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장·단기 구분 및 유동성 대체

- (1) 대여금의 장·단기의 구분은 만기도래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 또는 1년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2) 최초 발생 시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 하는 경우와 분할상환·약정이 있는 장기 대여금 중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유동성 대체한다.

② 장·단기대여금의 외화평가

기준통화가 외화인 대여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때,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4. 관련 법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용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예수김)이라 한다]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5.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 수입
7. 세계잉여금(세계잉여김)
8.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10. 그 밖의 총괄계정 운용 수익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국채의 원리금 상환
6.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보증채무 이행
8. 국채 관리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조 (용자계정의 자원과 용도) ① 용자계정의 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
3. 대총자금(대총자김)의 원리금 수입
4. 용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용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공공자김관리기김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용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국·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용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용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수입
7. 그 밖의 용자계정 운용 수익

②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용자 대상 사업에 대한 용자
2.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5. 용자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제5조 (차관계정의 자원과 용도) ① 차관계정의 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차관자금
2.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 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조 (재정차관의 구분) 재정차관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차관(이하 "전대차관"이라 한다)과 전대하지 아니하는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 (전대계약) ① 재정경제부장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대계약의 체결은 재정경제부장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전대금액) 재정경제부장이 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금액은 당해 차관협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전대차주에게 인출된 통화에 의한 금액 또는 차관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환산된 금액으로 하며 각 인출일자에 전대된 것으로 한다.

[국고금관리법]

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은 국고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 기타유동자산

1. 기타유동자산 정의

기타유동자산은 유동자산 중 앞서 설명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정부내단기대여금 및 단기융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동자산으로서 재고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및 지급보증금 등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	파생상품자산	-	
		재고자산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축산물	
			미착품	
			기타의저장품	
		저장품	-	
		소모성군수품	-	
		부가세대급금	-	
		선급금	-	
		선급비용	선급이자비용	
			기타의선급비용	
		지급보증금	임차보증금-국유	
			임차보증금-채권	
			임차보증금-일반	
			기타지급보증금	
		선급법인세	-	
기타의기타유동자산	-			
대지급금	-			
구상채권	-			
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			
구상채권대손충당금	-			
가지급금	-			

1] 기타유동자산

(1) 파생상품자산

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 지수 등과 같은 특정대상과 당해 특정대상을 적용하여 계약상의 공정가격 및 현금흐름액(또는 교환가액)을 고정하기 위한 화폐금액, 주식 수 등과 같은 특정단위를 가지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투자자산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류한다.

파생상품의 경우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자산(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또는 부채(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것)로 인식한다.

(2) 재고자산

판매목적의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축산물, 미착품 및 기타의 저장품으로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등
- ②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
- ③ 재공품 : 제품생산을 위해 제조과정에 있는 미완성품 중 현재 판매 가능한 상태인 반제품을 제외한 재고자산
- ④ 원재료 :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재료 및 매입부품 등
- ⑤ 부재료 : 제조 과정에서 필수되는 부수 재료 등
- ⑥ 축산물 : 축산업의 생산물로 가축의 가공품 및 공업원료 등을 포함
- ⑦ 미착품 : 매입하였으나, 재정상태표일 현재 운송 중에 있는 상품, 원재료 및 부재료 등
- ⑧ 기타의저장품 : 기업특별회계 등에서 발생하는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모품, 소모성 공기구비품, 수선용부품 등으로 특정 목적에 따라 저장이 필요한 물품인 "저장품"은 포함되지 않음

(3) 저장품

양곡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입된 상품 등으로, 재고자산의 기타의저장품과 달리 특정 목적에 따라 저장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조달특별회계의 비축원자재(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광석, 아연, 니켈 등), 수산발전기금의 비축재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비축농산물도 저장품에 포함된다.

(4) 소모성군수품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통상품으로 분류하는 군수품 중 소모성 자산에 해당하는 급식, 피복, 유류, 수리부속 등을 말한다. 통상품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장비 및 탄약을 의미하는 전비품 외의 군수품을 말한다.

(5) 부가세대급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다른 채권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정산할 때까지 기록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6) 선급금

취득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매입을 위한 선지급액으로 1년 이내에 취득 완료하여 해당 재고자산 계정(상품 등)으로 대체될 금액을 말한다.

(7) 선급비용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제공받을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하였으나 용역제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비용화하지 아니한 선지급분을 말하며, 선급이자비용 및 기타의선급비용으로 관리한다.

- ① 선급이자비용 : 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등에 대한 이자의 선지급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간미경과분
- ② 기타의선급비용 : 보험료, 임차료, 광고료,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등의 선지급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간미경과분

(8) 지급보증금

임대차 계약, 일상적인 상거래,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거래 상대방 또는 공탁소 등에 예치하는 담보 성격의 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잔여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금액으로, 세부계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차보증금 :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증금 및 전세금으로, 향후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② 기타지급보증금 : 영업보증금 및 소송사건으로 인해 예치한 공탁금과 국고채당금을 의미하며 영업보증금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담보 또는 공개경쟁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입찰에 대한 보증금을 말함. 공탁금은 「공탁법」 제4조에 의해 국가회계실체가 법원에 납부한 금액, 채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해 사업주 대신 국가회계실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금액을 의미

※ 기타지급보증금 중 영업보증금으로 유가증권을 제시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기타지급보증금(영업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처리함.

(9) 선급법인세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 등을 통하여 기중에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10) 대지급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자대금을 우선지급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조달청장이 우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구상채권

구상채권은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지급 후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구채권을 말한다. 주로 보증회계와 보험회계에서 발생한다. 보증회계의 구상채권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를 이행으로 인수하게 되는 채권을 말하며, 보험회계의 구상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또는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12) 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구상채권을 현재가치 평가한 경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을 말한다.

(13) 구상채권대손충당금

회수가 불확실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14) 가지급금

기중의 거래과정에서 지급한 자금 중 해당 과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사용하는 가계정과목으로, 결산조정 시 본계정으로 대체분개하여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임시계정을 말한다.

(15) 기타의기타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 또는 자산화되거나 비용화되는 기타유동자산 중 (1)~(14)에 해당하지 않는 계정과목이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파생상품자산 인식

파생상품의 경우 동일한 계약에 대한 파생상품자산 또는 부채는 상계하여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한다.

② 파생상품의 평가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는 최초 계약시점 및 각 결산기마다 공정가액(예: 차액결제금액)으로 평가한다.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액과 평가손익은 파생상품계약별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에 구분하여 기재하되, 파생상품계약별 공정가액(자산·부채)과 평가손익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재정운영표에 손익으로 계상한다.

③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재고자산은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고자산의 매입 부대비용

재고자산 구입에 따른 매입부대비용 중 운임, 보험료, 관세(환급관세가 있는 경우 이를 뺀 금액), 하역비, 매입수수료, 통관비 등과 같이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은 매입원가에 포함시키나 검수, 정리, 선별, 이관 등과 같은 내부용역비용은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⑤ 선급비용, 선급금 구분시 유의사항

(1) 선급비용

일정 기간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용역 제공 개시 시점에 선지급한 경우(예를 들어 화재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1년분의 화재보험료 전부를 보험기간 개시일에 지급), 그 지출액에 상당하는 용역 중 결산일까지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자산(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단, 용역 제공 예정기간이 재정상태표

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타비유동자산의 장기선급비용으로 분류한다. (☞장기선급비용)

(2) 선급금

일상적인 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국방물자 등을 포함하는 자산의 구입을 위하여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는 반면 선급비용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금액 중 해당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아니하여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선급비용은 기간경과에 따라 1년 이내에 비용화된다.

- ① 상품의 매입을 위한 대금 선급시 → '선급금'
- ② 자산의 위탁관리비용을 1년치 선급시 → '선급비용'

⑥ 기타유동자산의 외화평가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기타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때, 기준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선급금 및 선급비용의 경우 화폐성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화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4. 관련 법령

[공탁법]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률]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Ⅶ. 기타투자자산

1. 기타투자자산 정의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및 장기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서 투자회원권, 파생상품자산, 신탁사업수익권 등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투자자산	기타투자자산	투자회원권	-
		파생상품자산	-
		신탁사업수익권	-
		기타의기타투자자산	-

① 기타투자자산

(1) 투자회원권

사용 및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말한다.

(2) 파생상품자산

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 지수 등과 같은 특정대상과 당해 특정대상을 적용하여 계약상의 공정가격 및 현금흐름액(또는 교환가액)을 고정하기 위한 화폐금액, 주식수 등과 같은 특정단위를 가지는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에는 기타유동자산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류한다. (≡기타유동자산의 파생상품자산)

(3) 신탁사업수익권

부동산 신탁 등 신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설정한 수익권을 말한다.

(4) 기타의기타투자자산

(1) ~ (3)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투자자산을 말한다.

VIII. 일반유형자산

1. 일반유형자산 정의

국가회계기준 제13조에 따르면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다만, 국가회계기준 제14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은 일반유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일반유형자산	토지	-	-	
	토지사용수익권	-	-	
	건물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	
	건물사용수익권	-	-	
	구축물	-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	
	구축물사용수익권	-	-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
			고정성기계장치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이동성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고정성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사용수익권		이동성기계장치사용수익권	-
			고정성기계장치사용수익권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기통신기기	-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선박및항공기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전기통신기기감가상각누계액	-	
		사무용기기감가상각누계액		
		사무용집기감가상각누계액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감가상각누계액		
		선박및항공기감가상각누계액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전기통신기기사용수익권	-	
		사무용기기사용수익권		
		사무용집기사용수익권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사용수익권		
		선박및항공기사용수익권		
	기타일반유형자산	입목	-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전비품	-	-	
	전비품 감가상각누계액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토지	-	
		건설중인건물	-	
		건설중인구축물	-	
		건설중인기계장치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	
건설중인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건설중인전기통신기기	-	
		건설중인사무용기기		
		건설중인사무용집기		
		건설중인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		
건설중인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입목	-	
	건설중인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			

① 토지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록 및 관리되는 대상을 말한다.

② 건물

청사, 관사, 아파트 등 토지에 정착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시설물 등을 말한다.

③ 구축물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④ 기계장치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원·부재료를 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및 작업장치를 말한다. 기계장치는 이동성기계장치와 고정성기계장치로 분류한다.

(1) 이동성기계장치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기계장치,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2) 고정성기계장치

기계장치 중 이동성기계장치를 제외한 고정되어 있는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⑤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책상, 전화기 및 복사기 등의 집기비품 및 자동차, 크레인,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차량운반구를 말한다.

(1) 전기통신기기

전화기, 팩스 및 통신망 단자 등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2) 사무용기기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등 사무목적으로 보유중인 기기를 말한다.

(3) 사무용집기

책상, 의자 및 책장 등 사무목적으로 보유중인 집기를 말한다.

(4)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차량운반구로서 승용차 등 차량 및 크레인 등 건설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선박및항공기

행정서비스 제공목적으로 보유중인 선박 및 항공기 등을 말한다.

⑥ 전비품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직접 공여하는 전문적인 군사장비로서 육군전투장비, 해군전투장비, 공군전투장비, 국방관서전투장비 및 건설중인전비품을 포함한다.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된다. 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장비 및 탄약으로서, 다음의 군수품 등을 말한다.

- ①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 (비밀도서·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 등을 포함)
- ②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 ③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의 운용에 필요한 보조 장비

※ 통상품은 군수품 중 전비품 외의 것을 말한다.

전비품과 통상품은 소모성, 비소모성의 성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소모성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비소모성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구분	전비품	통상품
소모성	전비품(*1)	유동자산(소모성군수품(*2))
비소모성	전비품(*3)	일반유형자산(*4)

- (*1) 탄약
- (*2) 급식, 피복, 연료, 유류, 건설자재, 의무물자, 수리부속 등
- (*3) 화력, 특수무기, 기동 등 장비
- (*4)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비소모성 통상품

㉗ 기타일반유형자산

입목 및 그 외의 기타자산을 말한다.

(1) 입목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집단을 말한다.

(2)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㉑ ~ ㉖까지 설명한 일반유형자산 및 입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유형자산을 말한다.

㉘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일반유형자산 중 상각대상자산(㉑ ~ ㉗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계산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말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㉙ 사용수익권

일반유형자산(전비품 제외)을 계약에 의해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수익권은 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사용수익권의 대표적인 예로서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을 들 수 있다.

㉚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재정상태표일 현재 취득과정이 진행중인 일반유형자산의 건설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말한다. 일반유형자산이 건설되거나 취득되는 중에는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완성되거나 취득되는 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금융리스형태로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1) 리스는 취득형태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으며,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므로 자산으로 계상한다.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 ①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②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임대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 시 되는 경우
-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 연수의 상당부분(75%)을 차지하는 경우
-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 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90%)을 차지하는 경우
-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 자산인 경우

② 소액자산의 취득

「물품관리법」 상 물품의 경우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이상이면 일반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모성물품비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한다.

4. 관련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Ⅸ. 사회기반시설

1. 사회기반시설 정의

국가회계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사회기반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 및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국가회계기준상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나열한 시설 및 그 부속토지로서, 국유재산법상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해당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효익과 위험을 갖는 등 실질적으로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 중 다음의 두 가지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가회계기준의 사회기반시설로 인식된다.

- (1) 국가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국가가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산이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는 자산으로서 국가회계실체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1차적으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가의 소유 및 실질적 통제를 필수조건으로 한다. 이 때 국가의 “기반”이라 함은 물류·에너지·사람의 이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해석할 수 있다.

- (2)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회계실체에 유입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된 자산이므로 일반유형자산에 비해 장기간의 내용연수에 걸쳐 경제적 효과가 지속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사회기반시설	도로	국도	토지
			건물
			건축물
			기타
		고속도로	토지
			건물
			건축물
			기타
	도로감가상각누계액	국도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고속도로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도로사용수익권	국도사용수익권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토지사용수익권
		고속도로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구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철도	토지	-
		건물	-
		건축물	-
		기타	-
	철도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
		기타감가상각누계액	-
	철도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
		건물사용수익권	-
		구축물사용수익권	-
기타사용수익권		-	
항만	토지	-	
	건물	-	
	건축물	-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기타	-	
	항만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기타감가상각누계액	-	
	항만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	
		건물사용수익권	-	
		구축물사용수익권	-	
		기타사용수익권	-	
	댐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타	-	
	댐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기타감가상각누계액	-	
	댐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	
		건물사용수익권	-	
		구축물사용수익권	-	
		기타사용수익권	-	
	공항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타	-	
	공항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기타감가상각누계액	-	
	공항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	
		건물사용수익권	-	
		구축물사용수익권	-	
		기타사용수익권	-	
	기타사회기반시설	하천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상하수도	토지	
			건물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건축물		
			기타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	토지	
				건물	
				건축물	
		기타			
		기타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하천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상하수도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기타사회기반시설사용 수익권	하천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상수하도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도로(국도)	토지		
건물					
건축물					
기타					
건설중인도로(고속도로)		건설중인도로(고속도로)	토지		
			건물		
			건축물		
			기타		
건설중인철도		건설중인철도	토지		
			건물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구축물
			기타
		건설중인항만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건설중인댐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건설중인공항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건설중이하천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건설중인상하수도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① 일반국도 및 고속도로

일반국도란 「도로법」 제10조에 의거 중요 도시, 지정항만, 비행장, 국가 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란 「고속국도법」 제2조에 의거 자동차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부분을 이루는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포장, 터널, 교량 등이 도로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② 철도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의거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자산은 운영자산, 시설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이 중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시설자산과 기타자산이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이다.

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선로, 역시설, 교량, 전차선, 궤도, 노반, 통신시설,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열차제어설비 등이 철도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③ 항만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에 의한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시설은 항만구역 안팎의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관리과목 상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의 외곽시설 및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의 계류시설 등이 항만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④ 댐

댐이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라 다목적댐만이 사회기반시설인식대상에 해당하며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댐 본체, 여수로, 취수 시설 등이 댐 구축물에 해당한다.

5] 공항

공항이란 「**항공법**」 제2조에 의거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 안팎의 시설로서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선로, 포장, 유도등, 진입등, 레이더시스템, 전방향표지시설, 전술항행표지시설, 활공각시설, 항공관제통신시설 등이 공항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6] 기타사회기반시설

(1) 하천

「**하천법**」 제2조에 의거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제방(호안 포함), 수문(통문 및 압거), 보등이 하천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2) 상수도

수도란 「**수도법**」 제3조에 의거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일반수도 중 광역상수도가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취수보·침사지·흡수정

등의 취수시설, 관로 등의 송수시설, 착수정·혼화지·응집지·침전지·여과지 등의 정수시설, 조정조·농축조등의 배출수시설이 상하수도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3)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어항)

상기 사회기반시설 외에 「어촌·어항법」 제2조에 의거한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어항 중 국가어항만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한다.

국가어항이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수문·갑문·호안·둑·돌제·홍벽 등의 외곽시설, 안벽·물양장·계선부표·계선말뚝·잔교·부잔교·선착장·선양장 등의 계류시설, 항로·정박지·선회장 등의 수역시설 등이 기타의 기타사회기반시설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㉗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상기 ㉑내지 ㉖에 기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구성자산의 기표계정을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타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 (1) 토지 : 사회기반시설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
- (2) 건물 : 사회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건물로서 국유 재산법상 공공용으로 분류된 건물을 말한다.
- (3) 구축물 :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하며, 관리과목 별로 해당하는 구축물의 종류는 상기 ㉑내지 ㉖에서 서술하였다.
- (4) 기타 : 토지, 건물, 구축물 외의 자산을 말한다.

㉘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이란 사회기반시설 중 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시점부터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표시하는 과목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9)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이란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수익권의 대표적인 예로서 BTO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에서 국가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을 들 수 있다. 사용수익권은 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며, 상각금액은 기부에 따른 이익으로 인식한다.

10)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이 건설 또는 취득 중에는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로 처리하였다가 건설 또는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본 계정으로 대체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 관련 유의사항

사회기반시설 포함여부 결정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1) 도로

정부청사 내의 도로, 임도는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2) 항만

항계 내의 등대 뿐 만 아니라 항계 외의 등대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된다.

(3) 공항

공항의 사회기반시설 자산인식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민·군 공동 사용 비행장의 소유권은 군에 귀속되므로,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에서 제외됨
- ② 민간공항의 경우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건물은 한국공항공사에 귀속되며, 활주로·계류장 등의 시설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한국공항공사 소유의 건물은 사회기반시설의 인식대상에서 제외됨

(4) 하천

하천구역 토지는 자연자산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회기반시설 자산에는 포함하되 가격평가는 수행하지 않는다.

4. 관련법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도로법]

제10조(일반국도) ①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고속국도법]

제2조(용어의 정의) 2. "고속국도"란 자동차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3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 1. 운영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 2. 시설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 3. 기타자산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기본시설
 - (1) 항로·정박지·선유장(선류장)·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破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 나. 기능시설

-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5) 선박을 위한 급유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 (7) 항만시설용 부지
-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10) 방음벽·방진망(防塵網)·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 (2) 해양박물관, 어촌민숙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 마. 주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2004.1.29, 2007.10.17, 2008.2.29>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8. "공항시설"이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4.1>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4.1>
-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⑦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수로터널·수문조사시설·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1. "원수(原水)"란 음용(飲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한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

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둑·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정박지·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도로·다리·주차장·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어구 보전시설

(4)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製氷)·냉동·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가

공 시설

- (7) 육상 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 (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 (10)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 종묘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 다. 어항편익시설
-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 (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4)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횃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 (6)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X. 무형자산

1. 무형자산 정의

국가회계기준 제15조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국가회계실체 등이 행정목적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며,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경제적 효익과 행정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	-
	광업권	-	-
	소프트웨어	내부개발소프트웨어	-
		외부구입소프트웨어	
	기타무형자산	-	-

① 산업재산권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서, 국가가 취득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국가의 저작권을 말한다.

②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존재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소프트웨어

(1)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

(2)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

④ 기타무형자산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국가의 행정목적 등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구분지상권 포함) 등 민법상 용익물권이 이에 해당되며, 전세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소프트웨어 구입시 분류기준

- (1) 범용소프트웨어(예 : MS Office, 한글 등)와 전용소프트웨어(예 : Oracle, DB,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외부구입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
- (2) 소프트웨어개발비과 함께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하드웨어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하드웨어 구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하드웨어의 구입원가에 포함하여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

② 연구개발비 지출시 회계처리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처리한다. (☞ 연구개발비)

- (1)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2)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
-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4)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③ 소액자산의 취득

소프트웨어 취득 시,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모성물품비로 처리한다. (☞ 소모성물품비)

4.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XI. 유산자산

1. 유산자산 정의

국가회계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유산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기타비용	유산자산취득비	-
		관리토지취득비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수선유지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① 기타비용

(1) 유산자산취득비

문화예술품 등 유산자산을 최초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2) 관리토지취득비

보존재산인 관리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② 수선유지비

(1)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유산자산을 취득한 이후 관리 및 수선 시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본적·수익적 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표시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유산자산의 종류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서는 유산자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로서 그 관리주체가 국가인 문화재를 의미한다.

* 국유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 62조에 의한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의미

(2)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국립공원을 의미한다. 단, 공원시설은 제외한다.

(3)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등과 같이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호구역으로서 관리주체가 국가인 것을 의미한다.

② 유산자산 재무제표 표시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며, 그 종류와 현황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유산자산 인식 예외사항

- (1)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이 공용으로 행정활동에 사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 청사)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유산자산이 아닌 일반유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산자산의 특징을 가진 청사를 행정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의 건물 계정과목으로 분류한다.

- (2)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 내의 진입도로, 주차장, 사무실 등 부수시설은 행정활동에 위해서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일반유형자산의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인식한다. 또한 국립공원내 관리사무소의 유지보수비와 같이 유산자산 보호를 위해 설치한 주변시설의 관리·수선비용은 일반유형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인식한다.
- (3)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산 중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행정활동을 위해 사용한다고 보아 기타일반유형자산의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계정과목으로 분류한다.

4.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후략)

[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郡立公園)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후략)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중략)

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등) ①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중 인위적인 관리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후략)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XII.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중 장기미수채권 및 관련계정 이외의 각종 기타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선급금, 장기선급비용, 지급보증금 및 장기구상채권 등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기타비유동자산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금	-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이자비용
			장기기타의선급비용
		장기지급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장기임차보증금-국유
			장기임차보증금-채권
			장기임차보증금-일반
		장기구상채권	장기기타지급보증금
			장기구상채권
		장기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구상채권대손충당금	-
		기타자산	-
장기대지급금	-		

㉠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1) 장기선급금

일반적 상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구입 또는 완성된 유형 자산 등의 자산의 취득이나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하는 금액으로 1년 이후에 취득이 완료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될 금액을 말한다.

(2) 장기선급비용

재정상태표일 현재 차입금 등에 대한 선급이자와 보험료, 임차료, 광고료, 지급수수료 등에 대한 선급비용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이후에 비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말한다.

- ① 장기선급이자비용 : 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등에 대한 이자를 선급한 경우로서 기간미경과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이후에 비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② 장기기타의선급비용 : 보험료, 임차료, 광고료,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등을 선급한 경우로서 기간미경과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이후에 비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3) 장가지급보증금

임대차 계약, 일상적인 상거래,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거래 상대방 또는 공탁소 등에 예치하는 담보 성격의 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임에 따라 1년이 지난 후에 회수될 금액을 말한다.

- ① 전신전화가입권 : 가입한 전신 및 전화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신전화가입권은 반증이 없다면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함
- ② 장기임차보증금 :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1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증금 및 전세금으로, 향후 회수되는 금액은 해당 임차보증금이 국유재산, 국가채권인 경우에는 국유, 채권으로 그 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누어짐
- ③ 장기기타지급보증금 : 영업보증금 및 소송사건으로 인해 예치한 공탁금과 국고채당금을 의미함 (☞기타유동자산의 기타지급보증금)

(4) 장기구상채권

구상채권은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지급 후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구채권을 말한다. 주로 보증회계와 보험회계 등에서 발생한다. 보증회계의 구상채권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를 이행으로 인수하게 되는 채권을 말하며, 보험회계의 구상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

금 또는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장기구상채권은 회수가능액 중 회수기일이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5) 장기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구상채권의 회수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을 말한다.

(6) 장기구상채권대손충당금

회수가 불확실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7) 장기대지급금

대지급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자대금을 우선지급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조달청장이 우선 지급하는 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잔여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기타자산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 또는 자산화되거나 비용화되는 (1) ~ (7)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유동성대체

최초 자산의 발생 당시에는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년 내에 현금화되거나 자산/수익으로 대체되는 기타의기타비유동 자산은 기타의기타유동자산으로 대체한다.(☞기타유동자산의 기타의기타유동자산)

② 전신전화가입권 계정분류

전신전화가입권의 경우 보증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기지급보증금'으로 자산처리하고 기타 비용으로 지급하는 전신전화가입/가설료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한다.

③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의 외화평가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기선급금 및 장기선급비용의 경우 화폐성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화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부 채

II. 장·단기 차입금	92
III. 기타부채	100
IV. 장기충당부채	107

1. 부채의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제17조에 의하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2. 부채의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 제18조에 의하면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 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부채의 구분

국가회계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각각의 회계과목에 대한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한다.

회계과목	관리과목	설 명
유동부채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장기차입부채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
장기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부채로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

I. 장 · 단기 국 · 공채

1. 국채 및 공채 정의

국채는 국가에서 세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화된 국가채무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만을 지칭하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각각 지방채와 특수채로 분류하여 국채에서는 제외시킨다.

공채는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정부부문의 금전적 채무 전부를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그 금전적 채무 중에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공채(財政公債)만을 의미하며, 종류로는 ① 중소기업진흥채권, ②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등이 있다.

국채와 공채는 상환기일이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동부채의 단기 국공채로 표시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차입부채의 국공채로 표시한다. 이때, 최초 발행시점에서는 장기차입부채로 계상한 국채 및 공채의 상환기일이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단기국채가 아닌 유동성대체를 통해 유동성장기부채로 표시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단기 국 · 공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국 · 공채)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유동부채	단기국채	-
	단기국채할인발행차금	-
	단기국채할증발행차금	-
	단기자기국채	-
	단기공채	-
	단기공채할인발행차금	-
	단기공채할증발행차금	-
	단기자기공채	-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국채
		유동성장기국채할인발행차금
		유동성장기국채할증발행차금
		유동성장기자기국채
		유동성장기공채
		유동성장기공채할인발행차금
		유동성장기공채할증발행차금
		유동성장기자기공채
장기차입부채	국채	
	국채할인발행차금	
	국채할증발행차금	
	자기국채	
	공채	
	공채할인발행차금	
	공채할증발행차금	
	자기공채	

2-1. 유동부채

① 단기국채

국채란 국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여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국채의 발행은 「국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며,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보되는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세부 발행계획에 따라 국채를 발행한다.

단기국채는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국채를 말한다. 국채는 국가가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국채의 종류>

가.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나.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다.

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되었으나, 현재는 민간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② 단기국채할인발행차금

단기국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국채할인발행차금은 국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국채이자에 가산한다.

③ 단기국채할증발행차금

단기국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국채할증발행차금은 국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국채이자에 차감한다.

④ 단기자기국채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로서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를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채이며, 단기국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⑤ 단기공채

금전적 채무 중에서 국가회계실체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채를 제외한 재정공채(財政公債)를 의미하며, 종류로는 ①중소기업진흥채권, ②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③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이 있다. 단기공채는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공채를 말한다.

⑥ 단기공채할인발행차금

단기공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공채할인발행차금은 공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공채이자에 가산한다.

⑦ 단기공채할증발행차금

단기공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공채할증발행차금은 공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공채이자에 차감한다.

⑧ 단기자기공채

만기가 1년 이내인 공채로서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공채를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채이며, 단기공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⑨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최초 발행 당시에는 장기차입부채로 분류된 국채, 공채였으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국채, 공채에 대하여 유동성장기차입부채로 대체하며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 (1) 유동성장기국채
- (2) 유동성장기국채할인발행차금
- (3) 유동성장기국채할증발행차금
- (4) 유동성장기자기국채
- (5) 유동성장기공채
- (6) 유동성장기공채할인발행차금
- (7) 유동성장기공채할증발행차금
- (8) 유동성장기자기공채

2-2. 장기차입부채

① 국채

국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여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국채의 발행은 「국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며,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보되는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세부 발행계획에 따라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는 재정상대표일 현재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국채를 말한다. 국채는 국가가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② 국채할인발행차금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국채할인발행차금은 국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국채이자에 가산한다.

③ 국채할증발행차금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국채할증발행차금은 국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국채이자에 차감한다.

④ 자기국채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로서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를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채이며, 국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⑤ 공채

금전적 채무 중에서 국가회계실체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채를 제외한 재정공채(財政公債)만을 의미하며, 종류로는 ①중소기업진흥채권,

②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③구조조정기금채권등이 있다. 공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공채를 말한다.

⑥ 공채할인발행차금

만기가 1년 이상인 공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공채할인발행차금은 공채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공채이자에 가산한다.

⑦ 공채할증발행차금

만기가 1년 이상인 공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공채할증발행차금은 공채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공채이자에 차감한다.

⑧ 자기공채

만기가 1년 이상인 공채로서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공채를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채이며, 공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장기차입부채의 유동성대체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부채로 구분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차입부채에 대하여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로 대체한다.

② 외화표시 국·공채의 평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외화표시 국·공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외화로 평가한 후 결산 시에 외화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해외국채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기준환율로 환산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이자비용은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공채의 재정상태표 표시

재정상태표 상에 국·공채를 표시할 때에는 액면가액과 할인(할증)발행차금을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이 때 할인발행차금은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할증발행차금은 액면가액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④ 자기국채 회계처리

국채를 발행한 기관이 자기가 발행한 국채를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국채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을 발행한 중앙관서가 그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채의 차감계정으로 표기하여 국채발행총액과 자기국채 보유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AA부 소관 aa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BB부 소관의 bb기금이 보유할 경우 AA부 혹은 BB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자기국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가통합(AA+BB) 재무제표에서는 자기국채에 해당하게 되어 국채총액에서 자기국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⑤ 할인(할증)발행차금의 상각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각 이자지급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액은 국채의 액면가액에 표시이 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각 연도에 인식할 이 자비용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의 차이만큼 할인(할증)액을 상각(환입)한다.

시장금리에 따라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채의 시장이자율과 발행가액 및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채권시장에서 자동으로 결정된다.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효이자율은 해당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발행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따라서 각 연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 당해연도 이자비용 = 기초장부가액(액면가액±할인(할증)발행차금) × 유효이자율

㉔ 국채발행 시 부대비용의 처리

국채발행시 발생하는 인쇄비, 수수료 등의 발행수수료는 발행비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국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기재한다.

4. 관련법령

[국채법]

제3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特別計定)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를 발행한다.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채는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현금 지급을 갈음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그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償還) 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II. 장 · 단기차입금

1. 장 · 단기차입금의 정의

장 · 단기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로, 만기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 도래하는 부채는 장기차입금으로 1년 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은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한다. 단,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은 단기차입금이 아닌 유동성장기차입부채로 대체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재정증권	
		국내단기차입금	
		해외단기차입금	
		정부내단기차입금	단기전대차관 정부내단기예수금
		기타단기민간예수금	
		유동성국내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해외장기차입금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전대차관 유동성정부내장기예수금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유동성기타장기민간예수금	
		유동성기타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국내장기차입금	
		해외장기차입금	
		정부내장기차입금	장기전대차관 정부내장기예수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장기민간예수금	

2-1.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1) 재정증권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에 따라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증권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액을 말한다.

(2) 국내단기차입금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액을 말한다.

(3) 해외단기차입금

해외차입금은 해외공공기관, 해외금융기관 등 해외로부터 차입된 외화표시 또는 원화표시 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액을 의미한다.

(4) 정부내단기차입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간의 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액으로 기표계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단기전대차관 : 타회계/기금이 도입한 차관을 전대한 것으로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전대차관
- ② 정부내단기예수금 :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으로 1년 이내 상환의무가 있는 예수금

(5) 기타단기민간예수금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으로 1년 이내 상환의무가 있는 예수금을 말한다.

②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였으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차입부채에 대하여 유동성장기차입부채로 대체한다.

- (1) 유동성국내장기차입금
- (2) 유동성해외장기차입금
- (3)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 ① 유동성장기전대차관
 - ② 유동성정부내장기에수금
- (4) 유동성금융리스부채
- (5) 유동성기타장기민간예수금
- (6) 유동성기타장기차입부채

2-2. 장기차입부채

① 장기차입금

(1) 국내장기차입금

국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액을 말한다.(☞유동부채의 국내단기차입금)

(2) 해외장기차입금

해외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만기가 1년 이상인 차입금을 말한다.(☞유동부채의 해외단기차입금)

(3) 정부내장기차입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간의 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액으로 기표계정은 다음과 같다.(☞유동부채의 정부내단기차입금)

- ① 장기전대차관 : 타회계/기금이 도입한 차관을 전대한 것으로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는 전대차관
- ② 정부내장기에수금 :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으로 1년 이후 상환의무가 있는 예수금

(4) 금융리스부채

리스회사에 지급할 기본리스료를 할인한 금액을 말한다.(☞일반유형자산)

(5) 기타장기민간예수금

위의 (1)내지 (4) 속하지 않는 민간으로부터의 예수금을 말한다.(☞유동부채의 기타단기민간예수금)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국내차입금 분류 및 유동성 대체

- (1) 국내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을 국내차입금으로 분류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국내차입금으로 분류한다.
- (2) 차입 당시 만기가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은 단기차입금이 아닌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국내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한다.
- (3) 외화로 표시되는 차입금의 유동성외화장기부채는 장기부채에서 환산 후에 유동성부채로 대체처리 한다. 매 결산시 장기차입금계정 중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없는지를 확인하여 계정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외차입금의 분류

- (1) 해외차입금은 해외공공기관, 해외금융기관 등 해외로부터 차입된 외화표시 또는 원화표시 차입금을 의미한다. 해외차입금의 경우에도 국내차입금과 동일하게 유동성분류, 외화평가, 기중 차입한 경우 기말 결산시 미지급비용 인식 등의 회계처리는 국채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2) 해외차입금(차관)의 분류



- ① CPS(Currency pooling system)차관 : 차관액을 차관통화에 대한 환율변화에 연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차관선에서 차관원금을 PUV(Pool unit value)로 고정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차관
- ② 일반차관 : CPS차관이 아닌 차관으로 차관통화의 환율변화에 따라 차관원금이 변동하는 차관
- ③ 전대차관
 - 전대차관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결제자금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하는 외화자금으로 일반차관 및 CPS차관 모두 전대차관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해서만 전대차관이 발생한다.
 - 전대차관의 경우 차관선으로부터 직접 전대차주에게 자금을 집행하나 실질적으로는 계약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이 차관선에 대하여 1차적 의무를 지게 되어, 전대차주로부터의 자금회수 및 차관선에 대한 상환을 수행하게 된다.
- ④ 비전대차관 : 차관 중 전대차관이 아닌 차관

③ 정부내예수금의 분류 및 유동성 대체

- (1)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으로 1년 이내 상환의무가 있는 예수금은 '정부내단기차입금 - 정부내단기예수금'으로 처리하고 1년 이후 상환의무가 있는 예수금은 '정부내장기차입금 · 정부내장기예수금'으로 분류한다.
- (2) 최초 차입 당시에는 '정부내장기예수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정부내장기예수금'은 '정부내단기예수금'이 아닌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정부내장기예수금'으로 대체한다.
- (3) 타회계/기금으로부터 받는 경우 '정부내차입금 - 정부내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타회계 또는 기금에 빌려주는 경우 '정부내대여금 - 정부내예탁금'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면, aa기금에서 bb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 aa기금 재무제표 작성 시 '정부내대여금-정부내예탁금'으로 처리하며, bb기금 재무제표에는 '정부내차입금-정부내예수금'으로 처리한다. 국가통합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되어 '정부내차입금 - 정부내예수금'과 '정부내대여금 - 정부내예탁금'을 상계한다.
- (4) '정부내예수금'은 타회계/기금으로부터 받았으나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이며, '무상이전수입 - 전입금'은 동일하게 타회계/기금으로부터 받았으나,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④ 금융리스부채의 회계처리

- (1) 금융리스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설비자금을 용자하는 대신에 리스회사가 설비자체를 대부하는 물적 금융이다. 취득금액에 이자 및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에 리스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회수하며 원칙적으로는 중도해지는 없으며 리스물건에 대한 보수 및 관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2) 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지급할 최소리스료를 할인한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계상한다.(☞일반유형자산)
- (3) 리스이용자는 최소리스료를 금융리스부채의 원금상환부분과 이자비용

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 (4)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있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4. 관련법령

[국고금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총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재정증권은 무기명(無記名)으로 한다.

⑤ 재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재정증권은 액면(額面)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⑦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⑧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I. 기타부채

1. 기타부채 정의

기타부채는 기타유동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된다. 기타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중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이외의 부채를 말한다. 기타비유동부채는 만기가 1년 이상인 부채 중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를 제외한 부채를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기타유동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파생상품부채	-	
		미지급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사회보험미지급금	
			연금미지급금	
			보험미지급금	
			보증미지급금	
			기타의미지급금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기타예수금	
		예수보증금	임대보증금	
			기타예수보증금	
		선수금	-	
		미지급국세	-	
		미지급비용	미지급이자비용	
			기타의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수이자수익	
			기타의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			
가수금	-			
기타의기타유동부채	-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기타유동부채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의미지급금현재 가치할인차금	
기타 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	장기국고채무부담행위액		
		장기사회보험미지급금		
		장기연금미지급금		
		장기보험미지급금		
		장기보증미지급금		
		기타의장기미지급금		
	기타의 기타비유동부채	파생상품부채		
		장기에수금		
		장기에수보증금		장기임대보증금
				장기기타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비용		장기미지급이자비용
				장기기타의미지급비용
		장기선수수익		장기선수이자수익
			장기기타의선수수익	
	기타부채			
	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국고채무부담행위액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의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2-1. 기타유동부채

㉠ 기타유동부채

(1) 파생상품부채

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 지수 등과 같은 특정대상과 당해 특정대상을 적용하여 계약상의 공정가격 및 현금흐름액(또는 교환가액)을 고정하기 위한 화폐금액, 주식수 등과 같은 특정단위를 가지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기타비유동부채의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부채>

① 선물환

: 외국환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② 채권선도거래

: 미래 일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채권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

③ 이자율스왑

: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

(2) 미지급금

국가회계실체의 자산취득과 사회보험, 연금 및 보험 등의 비용부담 과정에서 발생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하며, 해당되는 기표계정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고채무부담행위액 :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계약이 이행된 부분 중 그 대가가 미지급된 금액
- ② 사회보험미지급금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지급의 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1년 이내 지급하여야 할 금액
- ③ 연금미지급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지급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1년 이내 지급하여야 할 금액
- ④ 보험미지급금 :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농어업재해재보험, 무역보험 등)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지급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 ⑤ 보증미지급금 :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증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액 중 보증과 관련하여 지급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 ⑥ 기타의미지급금 : 위 미지급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미지급금으로 예산 편성을 통하여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을 매입하였으나 미지급된 금액으로 1년 이내 지급하여야 할 금액

(3) 예수금

소득세의 원천징수나 부가세의 예수금과 같이 일시적인 보관금으로서 장차 1년 이내에 이를 반제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 단기성부채를 말하며, 해당 기표계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부가세예수금 :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징수하는 부가세액
- ② 기타예수금 : 소득세예수금, 주민세예수금, 건강보호예수금 등의 부가세예수금 이외 예수금

(4) 예수보증금

수취한 보증금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이를 반제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 단기성부채를 말하며, 해당 기표계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계약 완료시 회수하는 금액
- ② 기타예수보증금 : 입찰보증금예수금 등 임대보증금 이외의 보증금

(5) 선수금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선수취액 또는 유형자산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선수취액을 말한다.

(6) 미지급국세

결산 시에 발생하는 계정과목으로 국세징수활동을 수행하는 부처(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으로 반영된 미수국세의 증감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결산조정 시 발생한다. 미지급국세는 미수국세의 증감과 동일한 금액이 매년 계상되기 때문에 중앙관서 단위에서 미수국세의 금액과 미지급국세의 금액은 동일하게 된다. (☞국세수익의 미수국세의 증감)

(7) 미지급비용

기간경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미지급한 금액으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하며, 해당 기표계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미지급이자비용 : 국채·공채 또는 국내외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비용 (매출경과료 포함)
- ② 기타의미지급비용 : 이자비용 이외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비용

(8) 선수수익

선 수취한 수익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이후 1년 이내 기간에 속하는 수익 금액으로 기표계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선수이자수익 : 장·단기금융상품 및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이자금액으로서 차기에 귀속될 수익
- ② 기타의선수수익 : 이자수익을 제외한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취한 수익(임대료, 수수료 등) 중 차기에 귀속될 수익

(9) 미지급법인세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결산시에 당해 사업년도의 납부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서 차감한 잔액 또는 과거의 법인세에 대한 추가경정결정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결산일 현재 미납부 상태인 법인세 등을 말한다.

(10) 가수금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자금 중 해당 과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사용하는 과목으로서 그 과목이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과목으로 대체분개하여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임시계정을 말한다.

(11) 기타의기타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중 위 (1) ~ (10)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 상환되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기타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유동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금액으로 기타비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부터 유동성 대체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말한다.

(1) 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미지급금과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유동성대체금액으로 다음의 기표계정을 포함한다.

- ① 국고채무부담행위액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국고채무부담행위액과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유동성대체금액
- ② 기타의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 기타의장기미지급금과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유동성대체금액

2-2. 기타비유동부채

① 장기미지급금

국가회계실체의 자산취득과 사회보험, 연금 및 보험 등의 비용부담 과정에서 발생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1) 장기국고채무부담행위액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계약이 이행된 부분 중 그 대가가 미지급된 금액으로 1년 이후 지급될 금액을 말한다. (☞유동부채의 단기국고채무부담행위액)

(2) 장기사회보험미지급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지급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1년 이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유동부채의 사회보험미지급금)

(3) 장기연금미지급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지급

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1년 이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유동부채의 연금미지급금)

(4) 장기보험미지급금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농어업재해보험, 무역보험 등)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지급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1년 이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유동부채의 보험미지급금)

(5) 장기보증미지급금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증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액 중 보증과 관련하여 지급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1년 이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유동부채의 보증미지급금)

(6) 기타의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금 중 위 (1)~(5)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미지급금으로 예산 편성을 통하여 채고자산, 유형자산 등을 매입하였으나 미지급된 금액으로 1년 이후에 지급될 금액을 말한다. (☞유동부채의 기타의미지급금)

②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1) 파생상품부채

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 지수 등과 같은 특정대상과 당해 특정대상을 적용하여 계약상의 공정가격 및 현금흐름액(또는 교환가액)을 고정하기 위한 화폐금액, 주식수 등과 같은 특정단위를 가지는 1년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의무를 말한다. (☞기타유동부채의 파생상품부채)

(2) 장기에수금

소득세의 원천징수나 부가세의 예수금과 같이 일시적인 보관금으로서 장차 이를 반제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 부채로 1년 이후에 반제될 금액을 말한다. (☞기타유동부채의 예수금)

(3) 장기예수보증금

수취한 보증금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후에 이를 반제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 장기성부채를 말하며 해당 기표계정은 다음과 같다. (☞기타 유동부채의 예수보증금)

- ① 장기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계약 완료시 회수하는 금액
- ② 장기기타예수보증금 : 입찰보증금예수금 등 임대보증금 이외의 보증금

(4) 장기미지급비용

기간경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미지급한 금액으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기타유동부채의 미지급비용)

- ① 장기미지급이자비용 : 국채·공채 또는 국내외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비용 (매출경과료 포함)으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 ② 장기기타의미지급비용 : 이자비용 이외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비용으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5) 장기선수수익

선수취한 수익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이후 1년 이후 기간에 속하는 수익금액 말한다. (☞기타유동부채의 선수수익)

- ① 장기선수이자수익 : 장·단기금융상품 및 대여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차기 이후에 귀속되나 선수한 금액
- ② 장기기타의선수수익 : 이자수익을 제외한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취한 수익(임대료, 수수료 등) 중 차기 이후에 귀속될 수익

(6) 기타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중 위 (1)~(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후 상환되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미지급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금액으로 장기국고채무 부담행위액현재가치할인차금과 기타의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을 말한다.

- (1) 장기국고채무부담행위액현재가치할인차금
- (2) 기타의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파생상품부채 인식

- (1) 파생상품의 경우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자산(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또는 부채(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것)로 인식한다. 다만, 계상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액(예: 차액결제금액)으로 자산·부채를 동시에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 (2)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는 최초 계약시와 각 결산기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 (3)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액과 평가손익은 파생상품 계약별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에 구분하여 기재하되, 파생상품계약별 공정가액(자산·부채)과 평가손익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재정운영표에 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유동성 대체

최초 부채 발생 당시에는 기타비유동부채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기타비유동부채는 기타유동부채로 대체한다.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의무가 도래하여 장기미지급금에서 미지급금으로 유동성대체된 금액과 관련된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동성대체하여 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사용한다.

③ 연부국고채무부담행위액의 인식

연부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향후 몇 년간에 걸쳐 실제 상환예정시점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결산상 재무제표에는 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는 별도로 실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는 연도에 전체 상환금액을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④ 미지급비용의 인식

결산시점에 반영하는 비용에 대해 미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며,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하거나 임의로 비용을 계상할 수 없다. 그리고 결산시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급료, 임금, 상여 등은 반드시 미지급 설정한다.

지급임차료 등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일정기간 이후에 지불하게 되는 경우 해당 미지급비용에 대하여는 기말 결산 시에 비용으로 계상한다. 이러한 미지급비용 중 지급기일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다.

⑤ 선수수익의 인식

결산시점에 차기 이후에 귀속될 손익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차기 초에 수익으로 대체하거나, 용역제공시점에서 수익으로 대체시키는 분개를 하여야 한다. 선수수익은 일종의 부채이지만 금전으로 변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변제되는 부채이다.

사용료수익 등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받기 이전에 일정기간 사용료수익을 수령하고 이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수수익에 대하여는 기말 결산 시에 부채로 계상한다. 이러한 선수수익 중 용역제공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선수수익으로 계상한다.

⑥ 기타유동부채 계정과목의 구분

(1)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미지급액 및 사회보험, 연금 및 보험 미지급액은 미지급금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 비용과 관련된 미지급액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때 미지급비용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여 처리한다.

(2) 선수금과 선수수익의 구분

선수금은 자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수금을 의미하는 반면 선수수익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비롯한 각종 수익의 발생과 관련한 선수액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수수익은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대체된다.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선수한 금액이라도 수익과 관련된 선수액의 경우 선수수익으로 분류한다.

(3) 선수금과 예수금의 구분

선수금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며 물품의 인도 또는 공사의 완성 등을 조건으로 수취하는 것이나 예수금은 일상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며 향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다.

⑦ 화폐성 외화부채 환산

기타부채 중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잔액으로 한다. 선수금의 경우 화폐성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화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IV. 장기충당부채

1. 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장기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보험예치금
		국민연금전환금
		퇴직연금운용자산
	연금충당부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군인연금충당부채
		사학연금충당부채
		국민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기타장기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대표일 현재 전직원(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은 제외)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퇴직보험예치금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3) 국민연금전환금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말한다.

(4) 퇴직연금운용자산

국가회계실체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국가회계실체와는 법적으로 별개로 오로지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2 연금충당부채

(1)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미수급자의 경우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2) 군인연금충당부채

군인연금충당부채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미수급자의 경우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3 보험충당부채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 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을 말한다.

4 기타장기충당부채

기타장기충당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장기충당부채를 말한다.

(1) 보증충당부채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라 주채무 불이행으로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말한다.

(2)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이외 금액으로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상한다. 예로는 공사손실충당부채, 반품충당부채 등이 있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1 충당부채 인식

(1) 충당부채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2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산출 및 재무제표 표시

- (1) 퇴직보험예치금, 국민연금전환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한다.
- (2)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매 결산기말시점 전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설정전 충당금잔액과 비교하여 비용 및 부채로 계상한다.
- (3)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계약직·임시직·예술단원 등에 대해 산출한다.

- (4)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당기에 설정될 퇴직급여의 계산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퇴직급여 = 당기말 퇴직금 추계액 - (전기말 퇴직금 추계액 - 당기 중 실제퇴직금 지급액)

당기말 퇴직금 추계액 = 평균급여*¹ × 근속연수*²

*1 평균급여 = ① + ② + ③

*2 근속연수 : 결산 월 기준 근속연수

① 결산 월 직전 3개월 지급급여 / 3

② 결산 월 직전 1년 지급 상여금 / 12

③ 결산 월 기준 적치 수당 / 12

- (5)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시에는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상계하고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퇴직금 지급액을 미달하는 경우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 (6) 명예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지급 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 (7)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산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Plan)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

- ① 확정기여형 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며,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사용자가 약정급여를 부채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도 인식함
- ②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른 효과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③ 연금미지급금의 인식

- (1)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하는 연금사업에는 공무원, 군인, 사학 및 국민연금이 포함된다.
- (2)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중 실제 지급원인이 발생하여 지급이 확정된 부채는 '연금충당부채'를 '연금미지급금'으로 대체하며 장단기 여부에 따라 '장기연금미지급금' 및 '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 (3)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연금지급액 및 환급금을 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하며 장단기 여부에 따라 '장기연금미지급금' 및 '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④ 보험 및 보증충당부채 인식 대상

- (1) 보험충당부채를 인식하는 보험사업에는 농어업재해재보험, 무역보험, 우체국보험 등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이 포함된다.
- (2)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하는 보증사업에는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주택신용보증, 산업기반신용보증 등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증사업이 포함된다.

제 4 장 순 자 산

I. 기초순자산	127
II. 재원의조달	130
III. 재원의이전	141
IV. 조정항목	144

1. 순자산의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제23조에서는 순자산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순자산을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이 금액이 통상 자본이 되나 국가의 경우 주주 등 투자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순자산이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의 순자산(자기자본)은 주주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국가의 경우 이익을 추구하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자산이 크다는 것이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한 건전성이 높다는 것으로 단순히 해석하는 것은 어려우나 다만, 국가자산과 국가부채의 균형을 설명하는 지표로서 향후 중장기 재정운영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기본순자산	-	-	-
적립금 및 잉여금	-	-	-
순자산 조정	-	-	-

① 기본순자산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기존에 기업회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던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와 기금의 경우 자본금을 의미한다.

② 적립금 및 잉여금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와 기금의 경우 임의적립금, 결손금·잉여금 등을 포함한다. 결산 시 재정운영표 상의 재정운영결과가 적립금 및 잉여금에 반영된다.

③ 순자산 조정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않는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3. 관련 법령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총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기업형 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②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정형 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I. 기초순자산

1. 기초순자산 정의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을 의미하며 국가회계기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전기에 이미 보고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계정책이나 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한 후 기초순자산을 표시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기초순자산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오류수정손실	-
	회계변경누적효과	회계변경누적이익	-
		회계변경누적손실	-

㉠ 전기오류수정손익

오류수정이란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회계처리를 발견한 것으로 전 회계연도와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해 재정운영표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계정과목으로 반영한다.

다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무제표 항목을 수정하여 재작성하며, 이는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표시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를 수정함에 따른 영향은 전기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에 반영한다.

(1)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기초순자산의 증가로 반영

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기초순자산의 감소로 반영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회계변경누적효과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국가회계기준 또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거나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변경이란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국가회계기준 또는 관련법규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고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혹은 회계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이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상황의 변화, 정보의 획득 등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새로운 회계정책의 적용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해당년도의 기초순자산에 '회계변경누적이익' 또는 '회계변경누적손실'의 계정과목으로 반영하며,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회계정책의 적용에 따른 손익의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소급적 처리라고 할 수 있으나, 전기오류수정과 같이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소급적 처리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 회계변경누적이익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기초순자산의 증가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회계변경누적손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기초순자산의 감소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오류수정과 회계추정의 변경의 구분

오류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송과 관련하여 총당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II. 재원의 조달

1. 재원의 조달 정의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은 순자산의 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로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인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비교환수익과 예산배정액의 실제 집행액을 의미하는 국고수입으로 구분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은 일반 회계·기금 단위 및 중앙관서 단위에서만 표시되며, 국가통합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 제거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재원의조달	국고수입			
	국고이전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변상금수익	
			위약금수익	
			가산금수익	
			벌금수익	
			몰수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			
	무상이전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국고금회계전입금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	
		기타무상이전수입	
	채무면제이익		
	기타재원조달		

① 국고수입

국고수입은 일반·특별회계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실제 사용한 예산금액을 의미한다.

자금배정단계가 아닌 자금집행단계에서 국고금 실물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자금집행 시 국고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 국가회계실체의 직접적인 지출재원이 되므로 국고금회계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나, 해당 특별회계의 잉여 현금성 자산이 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에 포함되므로 국고금의 일괄관리를 위해 국고금회계를 사용하여 수익 및 비용지출 회계처리를 수행하며 별도의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해당 국가회계실체 재정상태표에 현금성자산이 표시되도록 한다.

② 국고이전수입

일반·특별회계에 수납된 수입금을 국고금회계로 이전시킬 때 국고금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③ 부담금수익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말하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부담금수익을 순자산변동표에 인식한다.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부담금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수익자부담금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을 말한다.

(2) 원인자부담금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비용을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을 말한다.

(3) 조세성부담금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지만 부과대상과 사용내역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법정부담금을 말한다.

<부담금수익의 종류에 따른 예시>

종류	예시
수익자부담금	석유판매부과금, 석유수입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원인자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소음부담금
조세성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배출부과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국외여행자납부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각 법률에 따른 부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부담금 내역>

소관부처	부담금 종류	근거법령
금융 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4조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
기획 재정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교육과학 기술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원자력법 제9조의3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원자력법 제111조
외교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소관부처	부담금 종류	근거법령
통상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38조
문화체육 관광부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관광진흥법 제30조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관광진흥법 제64조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관광진흥법 제64조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 및 제23조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가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농림수산 식품부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농지법 제36조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 제1항
	농산물수입이익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쓰레기유발부담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
	농산물수입이익금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인삼산업법제20조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
	축산물수입이익금	축산법 제45조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수산자원조성금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지식 경제부	안전관리부담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 2
	광물수입·판매부가금	광업법 제87조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4조
	연구개발부담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3조

소관부처	부담금 종류	근거법령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약사법 제 86조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71조
	배출부과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활용부과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총량초과부과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13조
	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총량초과부과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관부처	부담금 종류	근거법령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7
	총량초과부과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노동부	사업주부담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국토 해양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반시설설치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8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1조
	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3조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제76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제57조 및 제57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8조
	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시설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시설부담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소음부담금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방제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소관부처	부담금 종류	근거법령
		률 제49조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해운법 제22조제5항
	존치부담금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산지관리법 제19조
	임산물수입이익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원인자부담금	사방사업법 제19조
방송통신위원회	분담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 및 4항 5항

4 제재금수익

법령과 계약의 위반에 따라 해당 법령 및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회계실체가 징수하거나 지급받은 수익을 말한다.

(1) 변상금수익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을 말한다.

(2) 위약금수익

계약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가산금수익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을 말한다. 반면, 가산세수익은 국세와 관련하여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으로 본세의 과목에 가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가산금의 경우 가산금이 발생할 때 별도로 부과고지되는 경우와 최초 부과고지 시 납입기간 경과 후의 가산금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

도 부과고지 되는 경우는 부과고지 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최초 부과고지 시에 함께 표시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납부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4) 벌금수익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형벌의 성질을 갖는 벌금, 범칙금,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범칙금 등이 해당하며,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① 과징금수익 : 국가가 사법권·행정권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벌금·범칙금·과태료를 제외한 금전부담
- ② 과태료수익 :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
- ③ 범칙금수익 :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5) 몰수금수익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및 압수물 공매대금 등을 말한다.

5 기타비교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및 사회보험수익을 제외한 각종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6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과 정부외자산수증 또는 기부금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일반회계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을 말한다.

(2) 특별회계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을 말한다.

(3) 기금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주로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을 말한다.

(4) 정부내자산수증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 무상관리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회계조직변경으로 인한 정부부처간 자산이관은 정부내자산수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5) 정부외자산수증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는 경우 발생한다. 정부의 기부금의 경우 현금성자산 또는 금융자산인데 반하여 정부외자산수증의 경우 비금융자산인 점에 유의한다. 또한, 소유권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정부외자산수증의 경우 사용수익권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 때에는 정부외자산수증 대신 추후 사용수익권의 상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정부외기부금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금을 수증받는 경우 발생한다. 기금회계가 금융기관 등 민간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경우, 정부외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부외기부금의 경우 현금성자산 또는 금융자산인데 반하여 정부외자산수증의 경우 비금융자산인 점에 유의한다.

(7) 국고금회계전입금

국고금회계에서 국고금여유자금운용계정과 국고금일반계정간의 자금의 이전시 발생한다.

(8) 농특세이전수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받는 농어촌특별세수입으로 농어촌특별세수익은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농림수산물식품부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 다만 징수 결의시점에 농어촌특별세수익이 국세수익의 항목으로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되거나

국고금 배정절차를 통하여 수납 결의시점에 농림수산물식품부 특별회계의 농특세이전수입으로 순자산변동표에 인식된다.

(9) 주세이전수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이전받는 주세수입으로 주세수익은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 다만 징수 결의시점에 주세수익이 국세수익의 항목으로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되나 국고금 배정절차를 통하여 수납 결의시점에 해당 특별회계의 주세이전수입으로 순자산변동표에 인식된다.

(10) 기타무상이전수입

정부내에서 발생하는 무상전입 중 (1) ~ (9)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7]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원래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8] 기타재원조달

순자산의 증가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위에서 언급한 수익을 제외한 각종 재원조달거래를 의미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의 재무제표 반영 시 회계실체별 차이

-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국고통일주의에 따라 모든 세입을 국고에 불입 후 예산배정을 통해 재정운영순원가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므로 재정운영표가 아닌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반영된다. 이는 국가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된다.
- (2) 한편,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된다. 다만,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의 경우 각 기금의 업무 특성에 따른 재원의 유지 여부를 고려하여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 상 순자산증감으로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IV. 조정항목의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을 참조하도록 한다.

Ⅲ. 재원의 이전

1. 재원의 이전 정의

순자산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와 국고이전지출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재원의이전	국고이전지출			
	세출예산지출액			
	무상이전지출	일반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전출금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기금전출금		공무원연금보전금
				군인연금보전금
				기타기금전출금
		국고금회계전출금		
		정부내자산기부		
	기타무상이전지출			
기타재원이전				

① 국고이전지출

국고이전지출은 일반·특별회계에서 사용하며 일반·특별회계의 수익 중 수납되어 국고금회계로 이전된 수입금을 의미한다.

② 세출예산지출액

각 정부부처에 대한 정부의 예산배정 후 실제 집행 시 국고금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이다.

③ 무상이전지출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일반회계전출금

특별회계 및 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을 말한다.

(2) 기업특별회계전출금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이 특정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이나 계정 간 거래로서 동일 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으로 무상으로 주는 자금을 말한다.

- ①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 부문이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에 제공하거나,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 ②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3) 기금전출금

기금이 특정 기금 또는 타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을 말한다.

- ① 공무원연금보전금 :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기금전출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지원금 성격의 자금
- ② 군인연금보전금 : 군인연금과 관련한 기금전출금으로서 군인연금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인한 국방부의 지원금 성격의 자금
- ③ 기타기금전출금 : 기금이 특정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또는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금내의 타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4) 국고금회계전출금

국고금회계에서 국고금세부운용계정과 국고금일반계정간의 자금의 이전시 발생하는 계정을 말한다.

(5) 정부내자산기부

정부내자산기부는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의 무상관리 전환 시 무상관리전환을 주는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다. 다만, 회계조직변경으로 인한 정부부처간 자산이관은 정부내자산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국가회계실체에서 기타무상이전지출과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6) 기타무상이전지출

정부내에서 발생하는 무상이전지출 중 상기 (1) ~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기타재원이전

순자산에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위에서 언급한 거래를 제외한 각종 재원의 이전거래를 의미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1] 무상이전거래의 재무제표 반영방법 - 통합재무제표

- (1)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는 무상이전지출과 기타재원이전을 포함한다.
- (2)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순자산변동표 상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에 반영되고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 내부거래 상계 후 잔액이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 등'의 '기타재원조달및이전' 항목에 반영된다.

IV. 조정항목

1. 조정항목 정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비교환수익 등 또는 채원의 조달 및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하며,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기타순자산 증감을 포함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조정항목	납입자본의증감	납입자본의증가	
		납입자본의감소	
	투자증권평가손익	투자증권평가이익	
		투자증권평가손실	
	파생상품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실	
	자산재평가이익	자산재평가이익/일반유형자산	
		자산재평가이익/사회기반시설	
	기타순자산의증감	출연금의증가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가	
		출연금의감소	
		기타의기타순자산의감소	

① 납입자본의 증감

당 회계연도에 증가 또는 감소된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 및 기금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이라 함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기업 등의 민간부담금을 포함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납부 조성된 채원 일체를 의미한다.

(1) 납입자본의 증가

회계연도 중 증가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2) 납입자본의 감소

회계연도 중 감소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② 투자증권평가손익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장·단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 상 순자산 조정항목으로 인식하되, 투자증권평가이익과 투자증권평가손실은 투자증권의 종목별로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익과 손실을 각각 계상하도록 한다(총액법).

- (1) 투자증권평가이익 : 재정상태표일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금액을 말한다.
- (2) 투자증권평가손실 : 재정상태표일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금액을 말한다.

추후 해당 투자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양도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순자산 조정항목으로 계상된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가산하고, 투자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여 투자증권처분손익을 계산한다. 즉, 투자증권평가손익은 미실현보유손익의 성격으로 처분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③ 파생상품평가손익

미래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된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의미한다.

파생상품이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나 금, 석유와 같은 현물자산을 기초상품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자산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선도, 선물, 옵션, 스왑의 4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다양한 변형상품이 있다.

선도거래란 미래의 일정시점에 매매하기로 하고 가격, 수량 등을 당사자간에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는 수량, 규격, 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대상에 대하여 현재시점에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 또는 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

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옵션거래는 계약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스왑거래는 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를 말한다.

파생상품은 매매목적과 위험회피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시 위험회피의 유형은 공정가액 위험회피와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나눌 수 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부터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변동이자율 조건의 이자수입액 및 지급액의 변동을 들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 유형 및 구분에 따른 재무제표 인식 방법>

구 분	재무제표	비 고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으로 처리

4] 자산재평가이익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비배분수익)”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 (1) 자산재평가이익/일반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장부금액이 증가된 경우 그 차이금액을 인식한다.
- (2) 자산재평가이익/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로 인해 장부금액이 증가된 경우 그 차이금액을 인식한다.

5] 기타순자산의 증감

순자산변동표 상 순자산의 조정의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이외의 순자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증감을 의미하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무주물취득, 양여 등 정부 외에 대한 자산의 수증 및 기부 등으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므로 회계처리할 때에는 되도록 이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 (1) 출연금의 증가(감소) : 기금 등이 출연금의 증가 또는 감소했을 경우 인식한다.
- (2)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가(감소) : 기타 순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인식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1] 기금 출연금의 인식

- (1)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의 회계처리는 각 기금의 업무특성에 따른 재원의 유지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기금설치 근거법상 기금설치의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구 분	비 고	주요 용도(사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기금이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 사업비용 충당 - 관리, 운영비 등에 충당 - 연구개발 관련 비용 충당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증감	기금이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되어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 시설 신·증설 등 자본적 지출 - 자산매입 또는 융자금 재원 - 신용보증, 채무보증 재원 - 차입금·이자 상환 재원

- (2)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증감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증가'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원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및 기금전입금으로 회계처리 된다.



제 5 장 수 익

제1절 교환수익	155
제2절 비교환수익	183

1. 수익의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하고 있다.

2. 수익의 인식기준

①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인식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 (1) 측정요건으로 수익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수익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한다.
- (2) 가득요건으로 수익창출 활동을 위한 결정적이며 대부분의 노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거나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유입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② 국가회계기준 제29조에 따르면 수익의 원천에 따라 구분된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 (1) 교환수익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2)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으로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구 분	인식 시점
국세와 관련된 비교환수익	신고납부제도 적용세액	- 신고시점
	부과과세제도 적용세액	- 부과지시
	원천징수 조세수익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
국세수익을 제외한 비교환수익	부담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부수익	- 국가의 법적, 계약적, 행정적 청구권이 확정된 때
	기타비교환수익	-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거나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 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제재금수익	-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납부되거나 몰수 가 집행된 때

3. 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를 통해 보고되는데, 수익의 원천에 따라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고, 교환수익은 다시 프로그램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나뉜다.

1] 교환수익

(1) 프로그램수익

「원가계산준칙」 제13조에 따르면 프로그램수익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한다.

※ 「원가계산준칙」 부칙 제2조 프로그램수익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는 수입대체 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한다.

※ 수입대체경비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함. 이 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경비 등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수익 중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제외한 수입은 대부분 프로그램 별 대응이 어려우므로 수입대체경비수입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하는 부칙을 두고 있는 것임

(2) 비배분수익

「원가계산준칙」 제18조에 의하면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이자수익, 평가이익, 감액손실환입, 자산처분이익 등이 비배분수익의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익 항목이라 할지라도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비교환수익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말한다.

비교환수익의 경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반영된다. 단, 국가회계기준 제25조의 4항에서 규정하듯이 국고금 통합관리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 란에 표시한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인 국세의 경우 중앙관서의 경우에는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되며 국가통합 재무제표에서는 재정운영표에 나타난다.
(☞ 국세징수의 국세수익)

제 1 절 교환수익

I.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57
II. 연금수익	163
III. 보험·보증수익	167
IV. 이자수익	169
V. 평가이익	172
VI. 자산처분이익	174
VII. 기타수익	176

I .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의 정의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재화판매수익	-
		용역제공수익	-
		기타사업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수익사업이익전입금			

①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1) 재화판매수익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 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 및 용역제공 수익 이외 국가회계실체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아래와 같은 세부관리과목을 가진다.

- ① 사용료수익 : 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여 국가로 귀속되는 사용료 수익
- ② 수수료수익 :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
- ③ 수익사업이익전입금 : 경륜사업전입금과 같이 국가회계실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이익전입금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재화판매수익의 인식기준

재화판매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
-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음
-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
-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음

재화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인도시점이 수익인식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계정과목	예시
재화판매수익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잡곡·기타부산물 판매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 사업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나라장터운영수입 복권기금의 복권사업수입 등 항공 및 항만시설의 이용에 따른 재화 판매수입 간행물, 영상물 판매수입 및 행정용품 판매수입

② 용역제공수익의 인식기준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란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를 의미한다.

- ①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
- ③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④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위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정과목	예시
용역제공수익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편사업수익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의 수탁영업수입 등 기타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내자구매 사업 관련수입(예: 내자구매대행수익) 조달특별회계의 외자구매 사업 관련수입(예: 외자구매대행수익) 조달특별회계의 시설계약 사업수입(예: 시설계약 대행수익) 병원운영에 따른 용역제공수입 교도소운영에 따른 용역제공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국립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및 기타사업수입으로 강의 및 교육수입을 포함함

③ 용역제공수익 인식을 위한 진행기준

용역의 수익인식 기준인 진행기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 할 수 있는데,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 할 수 있으며, 제공된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만약 계약기간의 경과 또는 용역대가 수령정도를 통해 작업진행정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① 총예산작업량(또는 작업시간) 대비 실제작업량(또는 작업시간)의 비율
- ② 총예산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
- ③ 총추정 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하며, 총추정 원가는 현재까지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원가를 합제한 금액임)

4] 사용료수익의 인식기준

사용료수익은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한 경우 기간배분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입장료수익 등 1회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수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보증금의 형태로 예치한 예납금의 경우 사용수익 기간의 계약 완료시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사용료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임대보증금'(부채)로 처리한다. (☞ 재정상태표의 기타유동부채 중 예수보증금)

계정과목	예시
사용료수익	전기통신 수탁사업수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항공 및 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예: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 토지·건물 대여수입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대여 수입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5] 수수료수익의 인식기준

수수료수익은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수익으로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 및 고시수수료 등의 경우 기간단위의 계약이 아니라 1회성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즉시 대금을 수취하게 되므로 대금을 수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검사수수료 등의 경우는 계약 형태에 따라 기간단위 또는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정과목	예시
수수료수익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수수료 고시수수료 청원경찰수수료 조달특별회계의 나라장터운영수입

⑥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수익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과목을 선택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 국립재활원 의료수익의 경우 용역제공수익으로, 국토해양부 책임운영기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판매수익의 경우 재화판매수익으로 처리한다.

⑦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의 구분

용역제공수익은 국가회계실체가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며, 수익 창출을 위하여 실질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발생 가능한 수익이며, 기타사업수익의 경우는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적 사업으로서 기존의 자산을 이용하여 발생 가능한 수익을 의미한다.

⑧ 재화및용역제공수익과 수입대체경비수입

「원가계산준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수익 중 유일하게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수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경비와 관련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 그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여권발급경비, 대학입시경비, 등기소 등·초본 발급경비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수입대체경비수입은 그 정의 상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대부분이 프로그램수익 중 '재화및용역제공수익'에 해당한다.

4. 관련 법령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후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후략>

[국고금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후략>

II. 연금수익

1. 연금수익의 정의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연금수익은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연금수익	공무원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군인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사학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국가기여금
		국민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Ⅰ 연금수익

(1) 공무원연금수익

공무원연금수익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의 국가부담금 중 중앙정부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부담금,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의 본인부담금으로 나뉜다.

- ① 피고용자기여금 : 연금가입자인 피고용자가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② 고용주부담금 : 고용주 실체가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 실체로서 부담한 연금기금

(2) 군인연금수익

군인연금법에 의한 군인연금의 국가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된다.

- ① 피고용자기여금 : 연금가입자인 피고용자가 군인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② 고용주부담금 : 고용주 실체가 군인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 실체로서 부담한 연금기금

(3) 사학연금수익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국가부담금, 학교기관 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된다.

- ① 피고용자기여금 : 연금가입자가 사학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② 고용주부담금 : 학교경영기관이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 ③ 국가기여금 : 연금액의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경우 보전금이 아닌 국가부담금으로 수취하는 금액

(4) 국민연금수익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의 고용주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된다.

- ① 피고용자기여금 :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② 고용주부담금 : 사용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연금수익의 인식시점

연금의 경우 매달 부과지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과지 시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미수연금수익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자격변동, 납부예외의 수시발생 등에 따라 부과지 시에 연금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금액, 미납보험료 등은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연금기금의 연금 수취액은 고용주실체로부터 지급받는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로부터 수취하는 피고용자기여금,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받는 보전금,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국가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고용주 부담금과 피고용자기여금, 국가기여금은 프로그램수익의 연금수익으로 처리된다.

단,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받는 보전금은 연금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다른 국가회계실체 등에서 재원을 보조받는 금액으로 연금수익이 아닌 순자산변동표 또는 재정운영표에 비교환수익 등으로 인식한다.

사학연금기금의 국가기여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조에 따라 과달리 연금액의 일정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타 연금의 보전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비교환수익 등이 아닌 프로그램수익의 연금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연금수익의 회계처리

(1) 공무원연금의 회계처리

고용주실체가 해당 기금에 고용주부담금 지급 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복리후생비' 또는 '관리운영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부담비를 각 부처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안전부가 국가 각 부처의 공무원연금비용을 '전출금' 예산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출금 예산 집행을 통해 공무원연금기금 측에 납부한 고용주부담금 중에서 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 해당액은 순자산변동표 상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처리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 해당액은 재정운영표 상 '프로그램총원가-복리후생비' 또는 '관리운영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이 때 타 중앙관서는 행정안전부의 전출금 예산으로 집행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 해당액을 재정운영표 상 '프로그램총원가-복리후생비' 또는 '관리운영비-복리후생비'와 순자산변동표 상 '기타재원조달'로 처리한다.

한편, 공무원연금기금 측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고용주부담금 납부액에 대해 재정운영표 상 '연금수익'으로 계상한다.

이러한 고용주부담금 관련 거래는 국가회계실체 간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결산보고서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고용주부담액인 '복리후생비'는 연금기금의 '연금수익'과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피고용자기여금은 급여 지급 시 예수한 후 해당 연금에 납부한다.

다만, 사학연금의 지급의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비배분비용-보조비-공공기관보조비-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조비'로 처리한다.

4. 관련 법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의4항에 따라 교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Ⅲ. 보험·보증수익

1. 보험·보증수익의 정의

보험수익은 사회보험사업을 제외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험료수입을 의미한다. 보증수익은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을 통해 수취하는 보증료수입을 의미한다.

2. 세부계정과목

종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수익	보험수익	-	-
/비배분수익	보증수익	-	-

① 보험수익

보험수익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험료수입을 의미한다. 여기서 보험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작물재해재보험, 무역보험 등을 말한다. 이때 사회보험사업은 제외된다.

사회보험사업은 국가회계실체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업, 업무상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민의 소득 등을 보장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회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험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 비교환수익의 사회보험수익)

② 보증수익

보증수익은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수입을 의미하며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신용보증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자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보험수익의 인식

보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② 보증수익의 인식

보증수수료 등의 보증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IV. 이자수익

1. 이자수익의 정의

이자수익이란 외부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나 은행에 예치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 및 국채·공채·지방채·회사채 등 장·단기 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이자수익	금융상품이자수익	정기예금이자수익
			정기적금이자수익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채권이자수익	국채이자수익
			공채이자수익
			지방채이자수익
			회사채이자수익
			기타투자증권이자수익
		대여금이자수익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정부외전대차관이자수익
			정부외융자금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	-

Ⅰ 이자수익

(1) 금융상품이자수익 (☞ 유동자산의 단기금융상품 및 투자자산의 장기금융상품)

- ① 정기예금이자수익 :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② 정기적금이자수익 : 정기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③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 기타 장·단기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2) 채권이자수익 (☞ 유동자산의 단기금융상품 및 투자자산의 장기금융상품)

- ① 국채이자수익 : 단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 중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
- ② 공채이자수익 : 단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 중 공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③ 지방채이자수익 : 단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 중 지방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④ 회사채이자수익 : 단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 중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⑤ 기타투자증권이자수익 : 기타단기투자증권, 기타장기투자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3) 대여금이자수익 (☞ 유동자산의 단기대여금 및 투자자산의 장기대여금)

- ①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 : 정부내전대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②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 정부내 장·단기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③ 정부외전대차관이자수익 : 정부외전대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④ 정부외융자금이자수익 : 전대차관 이외 정부외의 기관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수익

(4) 기타이자수익

상위의 이자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이자수익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이자수익의 인식

- (1)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경우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한다. 이에 따라 대손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2) 이자수익은 발생기준에 의하여 발생한 기간에 수익으로 계상한다. 발생 이자란 실제 수령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미수수익)까지 포함한다. 즉, 이자수익은 그 성격상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선수취 하였으나 수익인식기간 미경과시에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 (3)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②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연불조건의 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으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는 총 금액이 현재시점의 현재가치와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채권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년 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여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한다.

V. 평가이익

1. 평가이익의 정의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파생상품, 외화자산·부채 및 기타자산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 시(외화부채의 경우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시) 사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
		외화평가이익	-
		기타평가이익	-

① 평가이익

(1) 파생상품평가이익

국가회계기준 제 49조(파생상품평가)에 따라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재정상태표 기말시점에 공정가액과 비교하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파생상품부채의 경우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시) 이를 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 기타유동자산의 기타투자자산 중 파생상품자산)

(2) 외화평가이익

재정상태표일 현재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이익을 말한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국가회계기준 제 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도록 한다.

여기서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자산과 부채를 의미한다. 화폐성자산의 예로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 미수채권, 대여금 등이 있으며 화폐성부채의 예로서는 미지급금, 장·단기차입금, 국·공채 등이 있다.

(3) 기타평가이익

(1) 내지 (2)이외의 기타자산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평가이익을 의미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재무제표 표시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는 최초 계약 시와 각 결산기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이 때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은 매매목적과 위험회피수단 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험회피수단 목적의 거래는 위험회피 유형에 따라 공정가액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구분된다.

구 분		재무제표	비 고
매매목적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위험회피 목적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조정항목)으로 처리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액과 평가손익은 파생상품계약별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혹은 순자산변동표에 구분하여 기재하되, 파생상품계약별 공정가액(자산·부채)과 평가손익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다.

②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기준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각 결산기마다 기준환율로 평가하여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한다.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오전 8시 30분 1회 공시함)을 적용한다.

VI. 자산처분이익

1. 자산처분이익의 정의

자산처분이익이란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증권처분이익	-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
		무형자산처분이익	-
		기타자산처분이익	-

① 자산처분이익

- (1) 단기투자증권처분이익 : 단기투자증권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재정상태표의 단기투자증권자산)
- (2)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 장기투자증권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재정상태표의 장기투자증권자산)
- (3)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 기타투자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재정상태표의 기타투자자산)
- (4)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 (5)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 사회기반시설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재정상태표의 사회기반시설)
- (6) 무형자산처분이익 :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재정상태표의 무형자산)
- (7) 기타자산처분이익 : 기타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재정상태표의 기타자산)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처분손익 인식 시 고려사항

- (1) 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의 처분손익 계산시의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사용수익권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재평가대상 자산의 순자산조정으로 처리된 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2) 투자증권 및 기타순자산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순자산 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투자증권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 증감을 고려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 (3)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교환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 및 현금 증감액을 고려하여 계상한다.

② 자산의 처분시점

- (1)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은 각각 국유재산대장과 물품대장에서 제각 시 처분한 것으로 본다.
- (2)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의 처분은 유형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고, 처분 후 매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을 처분시점으로 본다.

VII. 기타수익

1. 기타수익의 정의

기타수익은 교환수익 중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보험수익, 보증수익, 이자수익, 평가이익 및 자산처분이익 등의 수익 이외 각종 수익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기타수익	배당금수익	-		
		외환차익	-		
		파생상품거래이익	-		
		총당부채환입	-		
		대손총당금환입	-		
		융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	-		
		채무상환이익	-		
		과오지급금회수금	-		
		법인세환급금	-		
		보험차익	-		
		신탁사업이익	-		
		잡이익	-		
		구상이익	-		
		국채물가연동이익	-		
		감액손실환입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환입
					기타자산감액손실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	
		자산재평가손실환입			자산재평가손실환입
자산재평가손실환입 /일반유형자산 자산재평가손실환입 /사회기반시설					

① 기타수익

(1) 배당금수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 단기투자증권 및 장기투자증권으로 보유로 인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통해 받는 배당금을 말한다.

(2) 외환차익

화폐성 외화자산의 회수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상환 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현금수취/지급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3) 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의 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상품 관련 이익이다.

(4) 충당부채환입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상되어야 할 충당부채가 기 설정되어 있는 충당부채 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금액을 충당부채에 환입하거나,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5) 대손충당금환입

재정상태표일 현재 대손추산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금액을 대손충당금환입으로 계상한다.

(6) 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용자금의 평가 결과 발생하는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감소는 당기에 발생한 용자보조비용에서 먼저 차감하고, 차감 후 잔액은 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7) 채무상환이익

국채 등의 채무를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상환액의 차이를 말한다.

(8) 과오지급금회수금

자산매각대를 비롯한 각종 지급금에 대하여 과오로 발생대상금액을 초과 지급함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을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인식한다.

(9) 법인세환급금

법인세 납부 대상인 국가회계실체가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여 환급받는 금액으로 법인세환급이 확정되어 현금유입액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수익으로 인식한다.

(10) 보험차익

보험에 가입한 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액이 피해를 입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차액을 의미한다.

(11) 신탁사업이익

분양형 및 임대형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탁사업수익권의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한 순자산증가액으로 신탁사업이익이란 신탁사업의 이익 분배(중간배당)와 계약완료 시 수탁자로부터의 수령액의 누적액이 신탁사업수익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12)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13) 구상이익

손해배상, 변상 혹은 배상으로 변제받는 금액이 장부가액(없는 경우도 존재함)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14) 국채물가연동이익

물가연동국채 발행 시 물가연동지수가 직전회계연도보다 하락하는 경우 물가연동국채를 감소시키면서 물가연동이익을 인식한다. 이 때, 물가연동국채란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원금을 재계산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 시에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국채이다.

(15) 감액손실환입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을 환입 처리하는 계정이다. (☞ 재정운영표의 자산 감액손실)

- ①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 ②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
- ③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환입
- ④ 기타자산감액손실환입

(16)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로써 당기에 발견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로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및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말한다.

(17) 자산재평가손실환입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비배분수익)”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 순자산의 순자산조정)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기타수익의 인식

(1) 배당금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때 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법인세환급금은 법인세환급이 확정되어 현금 유입액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충당부채 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매년 기말 결산시점에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를 재계상하고, 기설정되어 있는 충당금과 비교하여 기설정액이 설정대상액보다 큰 경우 인식한다.

(3) 채무상환이익

채무상환이익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별적인 협상 등을 통해 채무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이익이 아니라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4) 보험차익

보험차익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로 멸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멸실 자산가액만큼 기타의미수금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보험금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확정 금액으로 기타의미수금을 조정하고 이때 이전에 계상한 기타의미수금보다 보험금 수령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보험차익으로, 적으면 그 차액을 재해손실로 계상한다.

(5) 잡이익의 인식 및 예시

잡이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불용품 매각의 경우 잡이익이 아닌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한다. 잡이익은 다음 내역을 포함한다.

- ㉠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수입
- ㉡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 ㉢ 기업특별회계 기타 영업의 차액 및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예: 간행물광고/ 판매수입, 관리비수입 등 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입)
- ㉣ 기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② 국채물가연동이익

국채물가연동과 관련한 자세한 회계처리는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회계처리지침」의 [참고 1] 기타국채의 특수회계처리를 참조한다.

③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처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 이익을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4. 관련법령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체국보험특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3. 삭제

제 2 절

비교환수익

I. 국세수익	185
II. 부담금수익	187
III. 제재금수익	189
IV. 사회보험수익	191
V. 기타비교환수익	192
VI. 채무면제이익	193
VII. 기타자원조달및이전	194

I . 국세수익

1. 국세수익 정의

「순자산변동표 및 국세징수활동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세수익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의 회수가능액을 말하며, 국세수익은 해당수익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비교환수익	국세수익	국세수익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환입	-

㉠ 국세수익

(1) 국세수익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액을 말한다. 중앙관서의 경우에는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되며 국가통합 재무제표에서는 재정운영표에 나타난다. (☞ 국세징수의 국세수익)

- ① 각종 국세수익 : 소득세수익, 법인세수익, 부당이득세수익, 상속세수익, 증여세수익, 재평가세수익, 부가가치세수익, 특별소비세수익, 주세수익, 전화세수익, 증권거래세수익, 인지세수익, 관세수익, 방위세수익,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교육세수익, 농어촌특별세수익, 종합부동산세수익, 토지초과이득세수익, 지방교육양여세수익, 기타내국세수익, 개별소비세수익 등 각종 조세수익
- ② 국세환급금 :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중 부가가치세 과오납 또는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환급금

(2) 대손상각비

미수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설정액 및 대손발생액을 말한다.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추가로 설정한다. (☞ 미수국세대손충당금)

(3) 대손충당금환입

미수국세채권에 대하여 결산 전 대손충당금잔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 그 초과분을 대손충당금환입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차액을 환입한다.(☞ 미수국세대손충당금)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재정운영표 및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비교

국가재정운영표의 국세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금액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당 중앙관서(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는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의 합계와 일치한다.

② 국세수익 종류별 수익인식기준 비교

- ① 신고납부제도 적용세액 : 신고 시점
- ② 부과과세제도 적용세액 : 부과고지 시점
- ③ 원천징수 조세수익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

4.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가. 소득세 | 나. 법인세 |
| 다. 삭제 | 라. 상속세와 증여세 |
| 마. 삭제 | 바. 삭제 |
| 사. 부가가치세 | 아. 개별소비세 |
| 자. 주 세 | 차. 삭제 |
| 카. 인지세 | 타. 증권거래세 |
| 파. 교육세 | 하. 교통세 |
| 거. 농어촌특별세 | 너. 종합부동산세 |

II. 부담금수익

1. 부담금수익 정의

「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부담금수익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 또는 정부 등 공적기관 서비스 공급의 대가를 말하며, 사용자 및 수익자가 해당 서비스와 연관이 깊은 재화나 서비스 사용 시 대가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와 간접적 형태로 지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국가회계실체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비교환수익	부담금수익	-	-

① 부담금수익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수익은 국가의 법적, 계약적, 행정적 청구권이 확정된 때 수익을 인식한다. 부담금수익에 대한 행정적 청구권은 징수결의에 의하여 부과지 시 발생하므로 부과지 시 수익을 인식하고, 향후 수취시 미수채권을 상계처리 한다.

부담금수익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익자부담금 : 공공시설의 실시를 위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법정 부담금

- ② 원인자부담금 :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비용을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법정 부담금
- ③ 조세성부담금 :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지만 부과대상과 사용내역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법정 부담금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부담금수익의 재무제표 표시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수익은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 (☞ 순자산변동표의 부담금수익)

4. 관련 법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Ⅲ. 제재금수익

1. 제재금수익 정의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제재금 수익은 법이나 규정 및 계약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지급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비교환수익	제재금수익	변상금수익	-
		위약금수익	-
		가산금수익	-
		벌금수익	-
		몰수금수익	-

① 제재금수익

- (1) 변상금수익은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을 말한다.
- (2) 위약금수익은 계약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 (3) 가산금수익은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을 말한다.
- (4) 벌금수익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한 형벌의 성질을 갖는 벌금, 범칙금,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범칙금 등을 말한다.
 ※ 벌금수익의 구분 : 과징금수익, 과태료수익, 범칙금수익
- (5) 몰수금수익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한 몰수금, 몰수물품 및 압수물 공매대금 등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제재금수익의 인식 시 유의사항

- (1) 일반적인 제재금수익은 부과지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2) 제재금수익 중 벌금수익과 몰수금수익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납부되거나 몰수가 집행된 때 수익을 인식한다. 벌금수익과 몰수금수익의 경우 다른 이전수익과 달리 세출예산의 재원은 되지만 그 관리절차는 일반세입과 달리 행형집행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목적이 강하므로 해당 수익은 다른 비교환수익의 수익인식 시기와 차이가 발생한다.

② 몰수금수익의 인식 시 유의사항

몰수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불관리를 하되 이러한 물품 중 화폐성자산은 압류 및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자산 및 몰수금수익을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은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주석으로 기재하였다가 몰수판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 처분된 때에 자산이나 수익을 인식한다.

③ 회계실체별 제재금수익의 재무제표 표시

제재금수익 중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순자산변동표의 제재금수익)

IV. 사회보험수익

1. 사회보험수익 정의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사회보험수익은 사회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비교환수익	사회보험수익	산재보험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고용보험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① 사회보험수익

- (1) 산재보험수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고용주부담금 및 본인(피고용자) 기여금을 말한다.
- (2) 고용보험수익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의 고용주부담금 및 본인(피고용자) 기여금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사회보험수익 인식 시 유의사항

사회보험수익은 모두 부과고지로 청구권이 확정되므로 부과고지 시 수익을 인식하고, 실제 현금수취 시 관련 미수채권을 상계한다. 부과고지시 징수 결정되는 금액은 전월 급여를 기준으로 추산하므로 실제 수취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과 채권상계액과의 차이는 사회보험수익에 가감한다.

V. 기타비교환수익

1. 기타비교환수익 정의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기타비교환수익은 부담금 수익, 제재금수익 및 사회보험수익을 제외한 각종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비교환수익	기타비교환수익	-	-

① 기타비교환수익

기타비교환수익은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및 사회보험수익을 제외한 각종 비교환수익을 말하며,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기타비교환수익의 재무제표 표시

기타비교환수익 중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 (순자산변동표의 기타비교환수익)

VI. 채무면제이익

1. 채무면제이익 정의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원래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비교환수익	채무면제이익	-	-

①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원래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채무면제이익의 인식 시 유의사항

채무면제이익 인식시점은 실제 채무의 면제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채무면제일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무면제일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일이 인식시점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인식시점으로 한다.

② 채무면제이익의 재무제표 표시

채무면제이익 중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

Ⅶ.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 기타재원조달및이전 정의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은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각종 재원조달 및 이전거래를 말한다.

정부내로부터의 무상이전수입·지출과 정부외로부터의 무상수증, 해당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원의 유출을 타회계/기금 등의 국가회계실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관련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하는 재원의 조달과 이전거래 등이 포함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비교환수익	기타재원조달및이전	무상이전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손익계정전입금
			자본계정전입금
			감가상각전입금
			당기순이익전입금
		기타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
		무상이전지출	일반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기금전출금
			손익계정전출금
			자본계정전출금
			감가상각전출금
당기순이익전출금			
정부내자산기부			
기타무상이전지출			
기타재원이전	-		

① 기타재원조달및이전

- (1) 무상이전수입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과 정부외자산수증 또는 기부금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 ① 일반회계전입금 :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 ② 특별회계전입금 : 정부내부거래로서 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 ③ 기금전입금 : 정부내부거래로서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 ④ 정부내자산수증 :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정부부처간의 유·무상관리환 및 무상관리전환을 하는 것. 다만, 회계조직변경으로 인한 정부부처간 자산이관은 정부내자산수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함
 - ⑤ 정부외자산수증 :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는 경우 발생함
 - ⑥ 정부외기부금 :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금을 수증받는 경우 발생함. 기금회계가 금융기관 등 민간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경우, 정부외기부금으로 처리함
 - ⑦ 손익계정전입금 :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손익계정으로 부터 세입예산을 이전받는 경우 발생
 - ⑧ 자본계정전입금 :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자본계정으로 부터 세입예산을 이전받는 경우 발생
 - ⑨ 감가상각전입금 :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고정자산 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이전받는 경우 발생
 - ⑩ 당기순이익전입금 :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당기손익 계산상의 순이익과 관련하여 이전받는 경우 발생
 - ⑪ 기타무상이전수입 : 정부내에서 발생하는 무상이전수입 중 상기 ①~⑩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이전수입

- (2) 기타재원조달은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원의 유출을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와 순자산의 증가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1)에서 언급한 수익을 제외한 각종 재원조달거래를 말한다.
- (3) 무상이전지출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말한다.
 - ① 일반회계전출금 : 특별회계 및 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 ② 기타특별회계전출금 :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기금이 특정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및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특별회계내의 타계정으로 무상으로 주는 자금
 - ③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 부문이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에 제공하거나,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 ④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 ⑤ 기금전출금 : 기금이 특정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금내의 타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및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대여 장학금(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로 회수)
 - ⑥ 손익계정전출금 :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타계정에서 손익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 ⑦ 자본계정전출금 :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타계정에서 자본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 ⑧ 감가상각전출금 :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고정자산 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이전하는 경우 발생
 - ⑨ 당기순이익전출금 :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과 관련하여 이전하는 경우 발생

- ⑩ 정부내자산기부 :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의 유·무상 관리환 및 무상관리전환을 하는 것
 - ⑪ 기타무상이전지출 : 정부내에서 발생하는 무상이전지출 중 상기 ① ~ ⑩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이전지출
- (4) 기타재원이전은 해당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원의 유출을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와 순자산에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위에서 언급한 수익을 제외한 각종 재원이전거래를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무상이전수입의 인식 시 유의사항

(1) 전입금

국가의 법적, 계약적, 행정적 청구권이 확정된 시점인 부과고지시점에 인식한다. 예산회계가 아닐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는 금전의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납부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나, 예산회계에 따라 징수결의에 의하여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 전이라 하더라도 징수 결의를 거친 후 부과고지 시에 이미 청구권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과고지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2) 자산수증 및 기부금수익

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제 자금의 수취와 자산수증을 받는 때 수익을 인식한다.

② 무상이전수입의 재무제표 표시 유의사항

무상이전수입은 중앙관서별 재무제표 작성 시 또는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작성 시 타회계/기금간의 무상이전지출 금액과 내부거래제거 된다. 단, 기업특별회계 등이 자본금 성격의 납입자본금을 수령할 경우 재정운영표상 무상이전수입으로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 중 '납입자본의증감'에 반영한다.

③ 각종 전출(입)금의 내부거래 제거

손익계정전출(입)금, 자본계정전출(입)금, 감가상각전출(입)금, 당기순이익 전출(입)금은 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수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세입예산의 이전을 위해 발생하는 계정으로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계정 간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제 6 장 비 용

I. 재화및용역제공원가	204
II. 인건비, 복리후생비	205
III.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211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14
V.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유류비, 피복비와급량비	217
VI.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국립학교운영비	220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223
VIII.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	226
IX. 기타이전비용	232
X. 수선유지비	235
XI. 감가상각비	238
XII. 대손상각비	241
XIII. 이자비용	242
XIV. 평가손실	245
XV. 자산감액손실	248
XVI. 자산처분손실	250
XVII. 기타비용	252

1. 비용의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따라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다.

2. 비용의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 제30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 (2)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 (3)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

3. 비용의 구분

비용은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를 통해 보고되는데 동 재정운영표 상에서 비용은 프로그램충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된다.

㉠ 프로그램충원가

- (1)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프로그램충원가는 국가회계실체의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충원가로 프로그램별로 추적 및 배부가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 (2) 「원가계산준칙」에 규정된 바대로 프로그램충원가는 회계실체의 성격에 따라 그 계산 방법에 다음과 같은 차이를 두고 있다.
 - ① 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충원가 : 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충원가=직접원가+(-) 부서 간 간접원가
 - ② 사업형 회계의 프로그램충원가 : 사업형 회계의 프로그램충원가=직접

원가+(-)부서간·부서내 간접원가

즉, 예산을 부서 간 통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는 직접원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로부터 배부 받은 간접원가는 가산하고 다른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차감하여 계산한다. 또한, 사업형회계에서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었으나, 다른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는 부서 내 간접원가로 보아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사업에 배부한다.

- (3) 한편,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차감하면 프로그램순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수익)

② 관리운영비

- (1) 「원가계산준칙」에 따르면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지만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 운영을 위해 발생한 인건비 및 경비를 말한다. 다만, 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의미한다.

- ① 행정형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해당 소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므로 인건비와 경비는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 ② 사업형 회계(기업특별회계, 기금)에서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동 실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 중 사업의 수행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사업형회계에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간접원가로 보아 해당 프로그램에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함

- (2)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이 중 인건비는 급여 및 퇴직급여로 구분 표시하고, 경비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등 그 성질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비배분비용

- (1) 「원가계산준칙」에 의하면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한다.
- (2) 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 기타비용 등이 비배분비용의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비용 항목이라 할지라도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충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I. 재화및용역제공원가

1. 재화및용역제공원가의 정의

재화및용역제공원가는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서 재화 판매로 인하여 판매·소모된 재고자산의 원가 및 용역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 정의하고 있다. (☞ 재정상태표의 재고자산)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재화판매원가	-
		용역제공원가	-

① 재화및용역제공원가

(1) 재화판매원가

재화판매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말한다.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관련된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하고,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과 관련된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2) 용역제공원가

용역제공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용역제공의 원가를 말한다..

II. 인건비, 복리후생비

1. 계정과목의 정의

인건비는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서 공무원 등이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의 일체의 금품 및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서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인건비	급여	정액급여
			상여금
			수당
			임시직보수
			기타보수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법정고용부담금	국민연금부담비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사학연금부담비
		기타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			
기타의기타복리후생비			

1 인건비

(1) 급여

- ① 정액급여 :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계약직 보수는 제외), 법관 및 검사의 봉급
- ② 상여금 : 성과상여금
- ③ 수당 :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수당^{*1}, 기타수당^{*2}

*1 정액수당 :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2 기타수당 : 강사료 등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강사료,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 별정 우체국장 보수 등의 보수성 경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 ④ 임시직보수 : 전문계약직, 사법연수생, 시보공무원, 청원경찰, 경비교도대원, 수련의, 공중보건 의사,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 기타 비정규직 등에 대한 보수
- ⑤ 기타보수 : 직급보조비, 교수보직경비^{*1}, 월정액여비^{*2}, 월정직책급^{*3}등

*1 교수보직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등

*2 월정액여비 :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3 월정직책급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 계정이다. (☞ 재정상태표의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의 일반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만약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text{퇴직급여} = \text{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액}^* - (\text{전기 말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액} - \text{당기 중 실제 퇴직금 지급액})$$

※ 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액은 당기 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을 말하며,

이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전직원(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은 제외)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② 복리후생비

(1) 법정고용부담금

- ① 국민연금부담비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1}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부담비

*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

- ② 공무원연금부담비 : 정규직공무원^{*2}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부담비

* 2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③ 군인연금부담비 : 군인^{*3}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군인연금부담비

* 3 「군인연금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 제외)

- ④ 고용보험부담비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부담비

- ⑤ 산재보험부담비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부담비

- ⑥ 건강보험부담비 : 공무원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부담금 (50%)

- ⑦ 사학연금부담비 : 사립학교교직원^{*4}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부담비

*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기타복리후생비

- ① 특근매식비 : 경상사무 특근자 매식비, 현물식사대체 급식비 등

- ② 일숙직비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한 일·숙직비

- ③ 시상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금, 예산절약 상여금

- ④ 경조금 : 경조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 ⑤ 건강진단비 : 건강진단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 ⑥ 선물대 : 직원에 대한 선물 구입비 등
- ⑦ 재해보상비 : 일시적 재해 보상금 지급액
- ⑧ 모임지원비 :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등
- ⑨ 기타의기타복리후생비 :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을 말하며, 여기서 선택적 복지제이란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사용인에게 부여함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임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발생주의에 의한 인건비 산정

급여 등 인건비는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 처리한다. 즉,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간경과에 따라 급여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미지급비용 등으로 계상한다. (☞ 재정상태표의 미지급비용)

② 교수보직경비와 월정직책급의 연계처리 시 유의할 점

교수보직경비는 예산과목의 특정업무비와 연계되어서는 안 되며, 월정직책급은 예산과목의 특정업무비와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③ 기타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의 구분

- (1)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비는 재해복구지원비로 분류된다.

4.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군인연금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중략>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건강보험법]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Ⅲ.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1. 계정과목의 정의

소모품비는 소모성 공구 및 소모용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며, 인쇄비는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를 말한다.

광고선전비는 상품·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 등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
		홍보물품비	-
		소모성물품비	-
		간행물비	-
		의료용품비	-
		기계장치및부품비	-
	인쇄비	-	-
	광고선전비	공고료및광고료	-
		견본비	-

① 소모품비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사용 후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소모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물품관리법 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1) 사무용품비는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 (2) 홍보물품비란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를 말한다.
- (3) 소모성물품비는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대가 등을 말한다.
- (4) 간행물비는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를 말한다.
- (5) 의료용품비란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소모성 의료용품 구입비를 말한다.
- (6) 기계장치및부품비는 이동성 및 고정성 기계장치에 대한 소모성공구 및 부품 구입비를 말한다.

2] 광고선전비

- (1) 공고료및광고료는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지급액을 말한다.
- (2) 견본비란 상품·제품 등의 품질, 형상 등을 거래처 또는 사용자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제품 등의 일부를 시용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1] 소모품비에 속하는 군수품

통상품으로 분류되는 군수품 중 급식·피복·연료·유류·수리부속 이외의 소모성물품이 소모되는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한다.

② 소모품비의 비용인식 시기

소모품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일시에 다량으로 구입하고 실제 소모는 장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요성에 따라 기타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에 속하는 기타의 저장품 계정과목으로 계상하고 실제 소모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③ 도서구입비의 구분

일반도서 구입비는 소모품비로 분류하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격의 도서구입비는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④ 광고선전비의 범위

- (1)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 및 기타 보고실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 (2) 광고선전비의 지출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한다.

⑤ 공고료의 구분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해 물품·용역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

4. 관련법령

[물품관리법]

제19조(재물조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1. 계정과목의 정의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말하며, 교육훈련비는 견학비, 초청강사료, 학원수강료, 연수원임차료, 수련회비, 위탁교육훈련비, 해외연수비용 등 공무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외주용역비는 국가사업의 연구를 위한 조사, 강연, 연구 용역비용과 전산 소프트웨어개발 소요경비, 전력화사업 연구위탁비, 청사, 시설 등의 유지관리 용역비 및 기타용역비를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
		시험연구재료비	-
		연구개발용역비	-
	교육훈련비	내부교육비	-
		국내교육비	-
		국외교육비	-
	외주용역비	연구용역비	-
		관리용역비	-
		위탁사업비	-
		기타용역비	-

① 연구개발비

(1) 시험연구비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2) 시험연구재료비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용되는 소모성 재료비로서 직접 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연구개발용역비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방위력 정비사업 중 각 군이 전력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비를 말한다.

② 교육훈련비

(1) 내부교육비는 자체 교육을 위한 강사료, 연수원임차료 등을 말한다.

(2) 국내교육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교육기관 위탁에 따른 직원의 학자금, 학원수강료, 견학비 등을 말한다.

(3) 국외교육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교육기관 위탁에 따른 학자금, 해외연수비용 등을 말한다.

③ 외주용역비

(1) 연구용역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 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주요설계 시행지침이나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차관자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비를 말한다.

(2) 관리용역비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기타 전산 운영, 기관운영 등 정부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국고로 회수하는 제사업비를 말한다. 다만, 국고대여장학금은 위탁사업비가 아닌 기타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한다.

(4) 기타용역비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를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연구개발비의 비용인식 시기

연구개발비는 일반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연구개발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구분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용역비는 국가사업 관련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을 수행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지만, 외주용역비의 연구용역비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설계, 기본설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V.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유류비, 피복비와급량비

1. 계정과목의 정의

세금과공과는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를 말하고, 수도광열비는 공공요금 중 수도료, 전기료, 가스·석유·중유·석탄 및 기타의 연료대 등 실내조명 및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유류비는 일반유형자산 내 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속하는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또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지출되는 유류비를 말하며, 피복비와 급량비는 공무원·군인 등에게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피복비와 급량비를 뜻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세금과공과	공공요금	-
		제세	-
	수도광열비	전기료	-
		연료비	-
		수도료	-
		오물수거료	-
	유류비	-	-
	피복비와급량비	피복비	-
		급량비	-

① 세금과공과

- (1) 공공요금이란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등을 말한다.
- (2) 제세는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② 수도광열비

(1) 전기료

전기 사용에 따라 발생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2) 연료비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을 말한다.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제도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행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절약전문기업과 공공기관 간에 배분토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절약전문기업의 선행 투자에 대한 대가로 공공기관은 계약기간 동안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일부를 원리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수도광열비 중 연료비로 처리한다.

(3) 수도료

상·하수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4) 오물수거료

쓰레기, 정화조 내 오물 등의 수거 비용을 말한다.

③ 피복비와급량비

(1) 피복비

작업복을 포함한 상시착용 피복, 침구(당직용 침구 포함) 및 개인장구 구입비, 직접 제조 시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를 말한다.

(2) 급량비

주·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합숙숙비, 상기 주식대 등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를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자산구입을 위한 공공요금과 제세의 처리

자산의 구입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과 제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② 공공요금 및 제세의 비용인식 시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출이 발생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해당 비용이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고 재정상태표일 현재 경과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상당하는 비용 지출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 재정상태표의 선급비용)

③ 연료비와 유류비의 구분

차량운반비와 관련된 연료비의 경우에는 연료비가 아닌 유류비로 분류하며,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는 수도광열비의 연료비로 분류한다.

④ 피복비 및 급량비와 구료비의 구분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피복비 및 급량비는 구료비(민간보조비)로 분류한다.

⑤ 피복비 및 급량비와 특근매식비, 식대의 구분

급량비는 군인 등을 대상으로 훈련 등 특정 활동과 관련된 주식대 등이다. 참고로, 특근매식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하게 발생하는 매식비, 현물 식사대체 급식비이며, 식대는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식대이다.

⑥ 연료비와 유류비, 피복비 및 급량비의 비용인식 시기

수도광열비 중 연료비와 유류비, 피복비 및 급량비의 경우 지출이 발생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대량으로 매입한 후 장기간 소모되는 경우에 매입시점에서는 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후 소모가 발생하는 시점에 소모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인식할 수 있다. (☞ 재정상태표의 선급비용)

VI.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국립학교운영비

1. 계정과목의 정의

여비교통비는 여비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국내출장여비, 해외출장여비 및 전근, 부임여비를 말하며, 업무추진비는 관서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행사진행경비,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를 말한다.

국립학교운영비는 공무원인건비 및 시설비를 제외한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를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업무추진비	행사진행경비	-
		일반업무비	-
		특정업무비	-
	국립학교운영비	-	-

① 여비교통비

(1) 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를 말한다.

(2) 국외여비

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를 말한다.

② 업무추진비

(1) 행사진행경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정례회의 경비, 외빈

초청 접대 경비, 행사 경비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체육대회 또는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를 말한다.

(2) 일반업무비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관서업무경비를 말한다.

(3) 특정업무비

위원회 참석비, 시험관리비,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여비교통비의 비용인식 시기

여비교통비는 지출이 발생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여비교통비가 장기에 걸쳐 발생하여 선지급 및 후지급 등의 사유로 기간의 경과에 대하여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결산 기말에 선급비용 및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다.

② 기계장치수선유지비에 해당하는 특정 여비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기계장치수선유지비에 계상한다.

③ 유사 계정과목의 구분

회식비는 식대가 아닌 업무추진비(일반업무비)로 분류되며, 급식비 및 급량비는 식대에 해당하므로 제외한다.

특근매식비는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또는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및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매식하게 되는 급식비로 회식비와 구분되므로 업무추진비(일반업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특근매식비)로 분류된다.

④ 국립학교 관련비용의 구분

국립학교에 속하는 공무원인건비는 인건비로 분류되며, 시설비는 그 내역에 따라 관련 유형자산 또는 수선유지비 등으로 처리한다.

4. 관련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경비부담등) ①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국악고등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소관 예산, 한국철도대학 및 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후략>

Ⅶ.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1. 계정과목의 정의

지급수수료는 업무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기료법정수수료, 외주가공비, 포장비, 보관비, 운송비 등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지급보험료는 설비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상품·제품 판매시의 운송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급임차료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 건물, 창고, 기계장치, 사무용 비품, 차량운반구, 리스자산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지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송금수수료	-
		등기료법정수수료	-
		검정및시험수수료	-
		외주가공비	-
		포장비	-
		보관비	-
		운송비	-
		상하차비	-
		지급의료비	-
		기타수수료	-
	지급보험료	-	-
	지급임차료	토지임차료	-
		건물임차료	-
		기타자산임차료	-
		운용리스료	-

① 지급수수료

- (1) 업무대행수수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외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2) 송금수수료 :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 수수료를 말한다.
- (3) 등기료법정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을 말한다
- (4) 검정및시험수수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를 말한다.
- (5) 외주가공비 : 외부에 제품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6) 포장비 : 물품 등의 포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7) 보관비 : 물품 등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8) 운송비 : 물품 등의 운송 및 운송을 위한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9) 상하차비 : 선적하역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상하차비 등을 말한다.
- (10) 지급의료비 : 공상치료비,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을 말한다.
- (11) 기타수수료 :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 내지 (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② 지급임차료

- (1) 토지임차료 : 토지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 (2) 건물임차료 : 건물, 장소 등의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 (3) 기타자산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및 ASP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를 말한다.

ASP서비스(Application Service Providing)란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고가의 소프트

웨어 구입, 유지비 대신 ASP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다.

- (4) 운용리스료 : 운용리스계약으로 비품이나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리스료 지급액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의 인식기준

지급보험료는 보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지급임차료는 임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선급되거나 미지급된 수수료, 보험료, 임차료의 처리

수수료, 보험료, 임차료를 선지급 또는 후지급하는 경우, 기말결산 시에 미리 지급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미지급된 부분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다.

③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수수료와 보험료

- (1)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지급수수료(예 : 설계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 (2) 자산을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보험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④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는 보험료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상해보험 등과 관련된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분류한다.

VIII.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

1. 계정과목의 정의

보전비는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또는 손해배상금, 사유시설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 법령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보상금 등을 말한다.

출연비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의해 지급근거가 있는 공공기관, 민간 또는 해외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보조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해외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보전비	보상비	사회보장수혜금
			보철구지급금
			장학금및학자금
			이주보상비
			부상치료비
			기타의보상비
		배상비	-
	재해복구지원비	-	
	기타보전비	-	
	포상금	-	
	출연비	공공기관출연비	-
		민간출연비	
		해외출연비	
보조비	공공기관보조비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 보조비	
		건강보험재정부담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보조비	
		차액보상금	
		기타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구료비
			차액보상금
			기타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
		해외보조비	-
		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 보전비

(1) 보상비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① 사회보장수혜금 :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 ② 보철구지급금 : 보철구 제작비 등
- ③ 장학금및학자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④ 이주보상비 :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⑤ 부상치료비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 ⑥ 기타의보상비 : ① 내지 ⑤ 이외의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2) 배상비

국가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인 행정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3) 재해복구지원비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유시설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 중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4) 기타보전비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해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을 말한다.

(5) 포상금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을 말한다.

2] 출연비

(1) 공공기관출연비

법령에 의한 중앙정부출연금 중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말한다.

(2) 민간출연비

법령에 의한 중앙정부출연금 중에서 민간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3) 해외출연비

법령에 의한 중앙정부출연금 중 해외출연금을 말한다.

3] 보조비

(1) 공공기관보조비

- ①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보조비 :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부담금
- ② 건강보험재정부담비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부담금
-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조비 : 사립학교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 ④ 차액보상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 ⑤ 기타공공기관보조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에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지원 등

(2) 민간보조비

- ① 구료비 :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주·부식비*¹ 및 피복비*² 등

* 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주·부식 취사용 연료대, 동 부대경비(공고료 및 운반비 등),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

* 1. 피복급여규정에 의한 환자, 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의 구입비,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② 차액보상금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목적의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등
- ③ 기타민간보조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상적 보조금과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등

(3) 자치단체보조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정부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및 지방정부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등을 말한다.

(4) 해외보조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및 자본형성 보조금,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조합에 대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등을 말한다.

(5) 교부금

- ①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지급대상에 따른 구분 차이

- (1) 국가가 공무원 등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은 교육훈련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타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장학금및학자금(보상비)으로 계상한다.
- (2)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그 지급대상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진다. 즉, 공무원에게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상여금, 상금 및 예산절약 상여금은 시상금(기타복리후생비)으로 계상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은 포상금(보전비)으로 계상한다.

㉡ 수령기관에서 자본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출연비의 처리

출연비의 경우 수령하는 기관의 설립근거법령에 출연금을 자본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향후 회수할 금액이 아니므로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출연비로 회계처리한다.

4. 관련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운영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IX. 기타이전비용

1. 계정과목의 정의

기타이전비용은 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및 이차보전비용 등 보험 및 연금의 지출원인이 발생하였거나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기타이전비용	사회보험비용	산재보험비용 고용보험비용	
		연금비용	공무원연금비용 군인연금비용 사학연금비용 국민연금비용	
			보험비용	-
			융자보조비용	-
			보증보조비용	-
		이차보전비용	-	

Ⅰ 기타이전비용

(1) 사회보험비용

사회보험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과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기타부채 증가액으로 구성되며, 보험 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비용과 고용보험비용으로 나누어진다.

- ① 산재보험비용
- ② 고용보험비용

(2) 연금비용 (☞재정상태표의 연금충당부채)

① 공무원연금비용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군인연금비용

「군인연금법」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사학연금비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④ 국민연금비용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3) 보험비용

보험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4) 용자보조비용 : 용자금과 관련하여 계상하는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비용 계정을 말한다. (☞ 재정상태표의 용자보조원가충당금)

(5) 보증보조비용 : 정부가 보증한 보증충당부채 중 우발부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6) 이차보전비용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를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사회보험비용과 보험료의 구분

보험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가회계실체가 보험회사나 기금 등에 납부하는 보험료 지급액은 기관운영비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다.

X. 수선유지비

1. 수선유지비 정의

수선유지비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건물수선유지비
			건축물수선유지비
			기계장치수선유지비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전비품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국도수선유지비
			고속도로수선유지비
			철도수선유지비
			항만수선유지비
			댐수선유지비
			공항수선유지비
			하천수선유지비
			상하수도수선유지비
		기타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① 수선유지비

(1)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는 수선비 지출 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세부관리과목으로 나누어진다.

- ① 건물수선유지비
- ② 구축물수선유지비
- ③ 기계장치수선유지비
- ④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 ⑤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 ⑥ 전비품수선유지비

(2)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 재정상태표의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는 수선비 지출 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세부관리과목으로 나누어진다.

- ① 국도수선유지비
- ② 고속도로수선유지비
- ③ 철도수선유지비
- ④ 항만수선유지비
- ⑤ 댐수선유지비
- ⑥ 공항수선유지비
- ⑦ 하천수선유지비
- ⑧ 상하수도수선유지비
- ⑨ 기타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3)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재정운영표의 유산자산취득비)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수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되며, 국가회계기준 제40조에 따라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①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② 수익적 지출 :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

② 경상적 수선유지비

자산화 되어 있는 수리부속이 자산의 경상적인 수선을 위하여 투입되는 경우에는 동 수리부속이 소모될 때 수선유지비로 계상한다.

③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유산자산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 시에는 유산자산취득비 및 관리토지취득비로 계상하며 취득 이후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수선유지비로 계상한다.

XI.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비 정의

감가상각비란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적정한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감가상각비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건물감가상각비
			구축물감가상각비
			기계장치감가상각비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기타의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전비품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도로감가상각비
			철도감가상각비
			항만감가상각비
			댐감가상각비
			공항감가상각비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

㉠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이란 자산평가과정이 아니라 원가배분과정을 말한다. 즉,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즉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무형자산이 상각대상자산이며, 토지와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1)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는 다음의 세부관리과목을 가진다.

- ① 건물감가상각비
- ② 구축물감가상각비
- ③ 기계장치감가상각비
- ④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 ⑤ 기타의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 ⑥ 전비품감가상각비

(2)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재정상태표의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는 다음의 세부관리과목을 가진다.

- ① 도로감가상각비
- ② 철도감가상각비
- ③ 항만감가상각비
- ④ 댐감가상각비
- ⑤ 공항감가상각비
- ⑥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감가상각비 (☞ 재정상태표의 무형자산)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내용연수의 산정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 할 때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 ① 자산의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수준
- ② 생산라인의 교체빈도, 수선 또는 보수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 관리수준을 고려한 자산의 물리적 마모나 손상

- ③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진부화
- ④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제한

② 감가상각방법의 선정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방법이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예를 들면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 ① 건물·구축물, 집기·비품, 무형자산의 경우 정액법에 따른 상각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률법 등을 적용하도록 한다.
- ②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준용한다.

※ 사회기반시설은 취득당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을 감가상각비용으로 대체가능함

③ 잔존가액의 관리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각 완료된 자산은 일정금액(1,000원과 취득원가의 5% 중 작은 금액)으로 비망 관리한다.

④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참조)

XIII. 대손상각비

1. 대손상각비 정의

대손상각비란 미수채권, 대여금 등 자산계정의 전기 대손추산액과 당기에 계산된 대손추산액과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설정하기 위한 비용 과목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대손상각비	-	-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대손상각비의 인식 및 회계처리

- (1) 국가회계기준 제34조(미수채권 등의 평가)에 의해 미수채권, 장기대여금 또는 단기대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 (2)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대손추산액 또는 대손추정액이라고 하고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 (3)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재정상태표의 대손충당금)
- (4) 한편, 재정상태표일 현재 대손추산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금액을 대손충당금환입으로 계상한다.

XII. 이자비용

1. 이자비용의 정의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공채 또는 국내외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재정상태표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이자비용	국채이자비용	-
		공채이자비용	-
		차입금이자비용	재정증권이자비용
			국내차입금이자비용
			해외차입금이자비용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기타민간예수금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금융리스이자비용
			기타의기타이자비용

① 이자비용

(1) 국공채이자비용

국채(공채)이자비용이란 발행한 국채(공채)에 대한 이자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며, 국채(공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국채(공채)이자비용에서 가산하고 국채(공채)할증발행차금환입액은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2) 차입금이자비용

- ① 재정증권이자비용 : 발행한 재정증권에 대한 이자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포함함
- ② 국내차입금이자비용 : 중앙정부부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이자와 민간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포함함

- ③ 해외차입금이자비용 : 다음과 같은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포함함

※ 해외차입금이자비용의 예는 아래와 같음

계정과목	예시
해외차입금이자비용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수수료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지출

- ④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 외국환은행이 국가회계실체에게 수입결제 자금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하는 외화자금(계정분류상 '해외차입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대여하여 발생하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
- ⑤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 다음과 같은 특별회계나 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포함함

※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의 예는 아래와 같음

계정과목	예시
정부내예수금 이자비용	일반회계나 기금이 특별회계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액 동일 특별회계 내의 타 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액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액 동일 기금 내의 타 계정에서 예탁 받은 예수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액

- ⑥ 기타민간예수금이자비용 :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3) 기타의 이자비용

- ① 금융리스이자비용 :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자산에 포함하여 계상함 (☞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 ② 기타의기타이자비용 : 국공채, 차입금, 금융리스이자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을 말함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이자비용의 산정

- (1) 발생하는 이자란 실제 지급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미지급비용)까지 포함한다.
- (2) 즉, 이자비용은 그 성격상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XIV. 평가손실

1. 평가손실의 정의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파생상품, 외화자산·부채 및 기타자산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시(외화부채의 경우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 시) 사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평가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
		외화평가손실	-
		자산재평가손실	자산재평가손실 /일반유형자산 자산재평가손실 /사회기반시설
		기타평가손실	-

1 평가손실

(1) 파생상품평가손실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국가회계기준 제 49조(파생상품평가)에 따라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재정상태표 기말시점에 공정가액과 비교하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평가손실로 인식한다. (☞ 기타유동자산의 기타투자자산 중 파생상품자산)

(2) 외화평가손실

재정상태표일 현재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실을 말한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국가회계기준 제 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도록 한다.

여기서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자산과 부채를 의미한다. 화폐성자산의 예로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 미수채권, 대여금 등이 있으며 화폐성부채의 예로서는 미지급금, 장·단기차입금, 국·공채 등이 있다.

(3) 자산재평가손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로 인한 자산 감소액을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에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으로 인식한다.

(4) 기타평가손실

(1) 내지 (3) 이외의 기타자산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파생상품평가손익 구분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은 매매목적과 위험회피수단 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험회피수단 목적의 거래는 위험회피 유형에 따라 공정가액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구분된다.

- ① 매매목적 : 매매목적이란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를 의미함
- ② 위험회피 : 위험회피란 위험회피대상항목^{*1}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상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2}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1 위험회피대상항목: “공정가액 변동위험 회피대상항목“은 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이며 ”현금흐름 변동위험 회피대상항목“은 미래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된 예상거래를 의미함

*2 위험회피수단: 그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과는 반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상품

및 금융자산

②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재무제표 표시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는 최초 계약 시와 각 결산기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이 때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구분		재무제표	비고
매매목적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위험회피 목적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조정항목)으로 처리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액과 평가손익은 파생상품계약별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혹은 순자산변동표에 구분하여 기재하되, 파생상품계약별 공정가액(자산·부채)과 평가손익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다.

②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기준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각 결산기마다 기준환율로 평가하여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한다.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오전 8시 30분 1회 공시함)을 적용한다.

XV. 자산감액손실

1. 자산 감액손실의 정의

자산의 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자산감액손실	투자증권감액손실	-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	-
		기타자산감액손실	-

① 자산감액손실

국가회계기준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제3항에 의하여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 재정운영표의 기타수익 중 감액손실환입)

이때 회수가능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의미한다.

(1) 투자증권감액손실

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 재정상태표의 장단기투자증권)

※ 투자증권의 장부가액은 투자증권평가손익(순자산조정)이 미실현손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감액손실이 됨

(2)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3)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 재정상태표의 사회기반시설)

(4) 기타자산감액손실

기타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감액손실과 폐기손실의 비교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보유 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재정운영표의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로 처리한다. 한편,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XVI. 자산처분손실

1. 자산처분손실의 정의

자산처분손실이란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사용수익권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증권처분손실	-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
		무형자산처분손실	-
		기타자산처분손실	-

① 자산처분손실

- (1) 장단기투자증권처분손실 (☞ 재정상태표의 장단기투자증권)
- (2)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 재정상태표의 기타투자자산)
- (3)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 (4)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 재정상태표의 사회기반시설)
- (5) 무형자산처분손실 (☞ 재정상태표의 무형자산)
- (6) 기타자산처분손실 (☞ 재정상태표의 기타자산)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장·단기투자증권 및 기타순자산의 처분손익 산정 시 고려사항

장·단기투자증권 및 기타순자산과 관련된 처분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투자증권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 증감을 고려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② 교환으로 인한 처분가액의 산정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처분가액은 교환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 및 현금증가액을 고려하여 계상한다.

③ 처분 시 장부가액의 산정

처분손실 인식 시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사용수익권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기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월할 계산한다. 또한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재평가이익이 존재하는 자산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인식해야 한다.

XVII. 기타비용

1. 기타비용의 정의

외환차손, 파생상품거래손실 및 자산기부 등의 각종 기타비용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기타비용	외환차손	-
		파생상품거래손실	-
		자산기부	-
		환급금	-
		자산폐기손실	-
		채무상환손실	-
		신탁사업손실	-
		유산자산취득비	-
		관리토지취득비	-
		법인세비용	-
		재해손실	-
		잡손실	-
		국채물가연동손실	-
		전기오류수정손실	-
		전기과오납금반환금	-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		

Ⅰ 기타비용

(1) 외환차손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회수 및 상환 시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실제 현금 수취 또는 지급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2) 파생상품거래손실

파생상품의 실행일에 발생하는 파생상품 관련 손실을 말한다.

(3) 자산기부

자산기부는 국가회계실체가 민간 등에 반대급부 없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에 자산기부로 계상한다.

(4) 환급금

부담금수익 등의 적법하게 인식한 수익이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때에 발생하는 환급금비용을 말한다. 이 때 수익에 직접 차감하지 아니하고 기타비용으로 계상한다.

(5) 자산폐기손실

국가회계실체가 보유중인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재해 등으로 전부 멸실되었을 때 인식한다.

(6) 채무상환손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의 지출에 따른 손실을 의미한다.

(7) 신탁사업손실

분양형 및 임대형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 또는 자산가액이 신탁사업수익권을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말한다.

(8) 유산자산취득비/관리토지취득비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는 국가회계실체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산자산취득비/관리토지취득비로 비용 처리한다.

(☞ 재정상태표의 유산자산)

(9) 법인세비용

법인세 등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말한다.

(10) 재해손실

보험에 가입한 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미달하는 경우 계상하는 손실이다.

(11) 잡손실

프로그램총원가/비배분비용의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손실이다.

(12) 국채물가연동손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변동 분을 반영하여 원금을 재계산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 시에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국채로, 물가연동지수가 직전연도보다 상승한 경우 물가연동국채를 증가시키면서 물가연동손실을 인식한다. 이하 자세한 회계처리는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지침」의 [참고 1] 기타국채의 특수회계처리를 참조한다.

(13) 전기오류수정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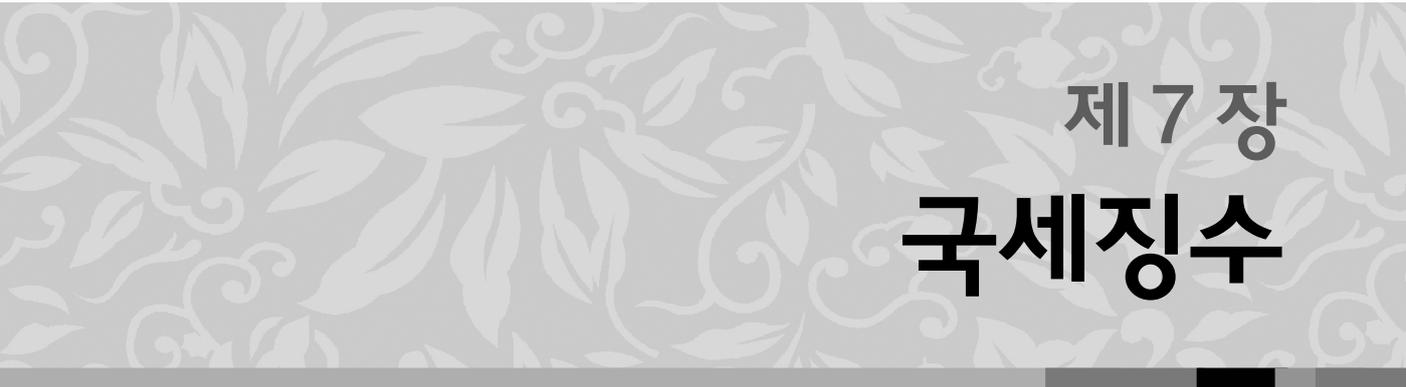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당기에 발견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로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및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사항이다.

(14) 전기과오납금반환금

과오납반환금(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 및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의해 그 반환이 결정된 것) 중 전년도 발생한 수입금을 당기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금액을 말한다.

(15)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오류정정(과거 징수결의 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 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 중 당초 징수결의 시점과 오류정정 시점이 상이한 회계연도일 경우 그 정정금액을 말한다.



제 7 장 국세징수

I. 국세수익	258
II. 처분	264

1. 국세징수활동의 의의

국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수입의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여 해당 세입을 부처의 수익으로 계상하게 되면 재정운영표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와 관련된 국세수익금액과 국세수입금액(현금수납액)의 회계처리를 별도의 보고서에 모으는 처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활동표를 작성한다.

2. 국세징수 계정과목의 구분

국세징수 계정과목은 크게 국세수익과 처분으로 구분되며 국가가 부과 또는 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국세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 등으로 수납하여 국고금회계 등으로 이전시키는 금액을 처분으로 인식한다.

3. 국세징수활동표

국세징수활동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필수보충정보로 보고되며 국세 및 관세 징수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과 이의 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 등 국세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만 작성하는 것으로 기금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징수활동표 상 국세수익은 국가결산보고서 통합시 국가재정운영표의 국세수익으로 기재되며, 이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통합 후에는 국세징수활동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세징수활동표 상 국세수익 금액과 처분 금액은 항상 동일하다.

I. 국세수익

1. 국세수익의 정의

국세수익은 국세징수활동표의 계정과목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의 회수가능가액을 의미한다.

2. 세부 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국세수익	소득세수익	소득세수익	
		소득세수익국세환급금	
	법인세수익	법인세수익	
		법인세수익국세환급금	
	부당이득세수익	부당이득세수익	
		부당이득세수익국세환급금	
	상속세수익	상속세수익	
		상속세수익국세환급금	
	증여세수익	증여세수익	
		증여세수익국세환급금	
	재평가세수익	재평가세수익	
		재평가세수익국세환급금	
	부가가치세수익	부가가치세수익	
		부가가치세수익국세환급금	
	주세수익	주세수익	
		주세수익국세환급금	
	전화세수익	전화세수익	
		전화세수익국세환급금	
	증권거래세수익	증권거래세수익	
		증권거래세수익국세환급금	
인지세수익	인지세수익		
	인지세수익국세환급금		
관세수익	관세수익		
	관세수익국세환급금		
방위세수익	방위세수익		
	방위세수익국세환급금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국세환급금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교육세수익	교육세수익	
		교육세수익국세환급금	
	농어촌특별세수익	농어촌특별세수익	
		농어촌특별세수익국세환급금	
	종합부동산세수익	종합부동산세수익	
		종합부동산세수익국세환급금	
	토지초과이득세수익	토지초과이득세수익	
		토지초과이득세수익국세환급금	
	지방교육양여세수익	지방교육양여세수익	
		지방교육양여세수익국세환급금	
	기타내국세수익	기타내국세수익	
		기타내국세수익국세환급금	
	개별소비세수익	개별소비세수익	
		개별소비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소득세수익대손상각비	
		법인세수익대손상각비	
		부당이득세수익대손상각비	
		상속세수익대손상각비	
		증여세수익대손상각비	
		재평가세수익대손상각비	
		부가가치세수익대손상각비	
		주세수익대손상각비	
		전화세수익대손상각비	
		증권거래세수익대손상각비	
		인지세수익대손상각비	
		관세수익대손상각비	
		방위세수익대손상각비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대손상각비	
		교육세수익대손상각비	
		농어촌특별세수익대손상각비	
종합부동산세수익대손상각비			
토지초과이득세수익대손상각비			
지방교육양여세수익대손상각비			
기타내국세수익대손상각비			
개별소비세수익대손상각비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대손충당금환입	소득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법인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부당이득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상속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증여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재평가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부가가치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주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전화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증권거래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인지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관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방위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교육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농어촌특별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종합부동산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토지초과이득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지방교육양여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기타내국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개별소비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국세종류>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방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토지초과이득세	지방교육양여세
기타내국세			

① 각종 국세수익(회계과목)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으로 인식한 수익금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 (1) 각종 국세수익(관리과목) : 각 수익인식시점에 따라 인식한 수익금액
- (2) 각종 국세수익국세환급금 : 국가가 과오납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각종 국세수익(관리과목)의 차감계정이다.

② 대손상각비

각종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으로 결산조정시점에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차이금액을 인식한다.

③ 대손충당금환입

각종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시 각종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금액을 인식한다.

참고. 폐지세목

- 부당이득세 : 2007.07.19. 부당이득세법 폐지
 - 방위세 : 2009.01.01. 방위세법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 :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 지방교육양여세 : 2005.01.01. 지방교육양여금법 폐지
- * 법이 폐지된 국세도 미수납액이 미수국세로 남아있거나 세무조사 등에 따라 국세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국세수익의 인식시점

국세수익의 인식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 인식시점에 해당되는 세목은 다음과 같다.

수익인식시점	세 목
신고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과시	부당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기 타	인지세-과세문서 작성 시, 전화세-사용료 영수 시

② 국세수익의 재무제표 표시

- (1) 국세수익은 국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 수입원으로 징수기관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각 중앙관서 및 회계·기금에 예산배정된다. 각 중앙관서 및 회계·기금은 국세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배정을 받은 후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 (2) 따라서 중앙관서 결산의 관점에서는 국세수익에 대해 징수기관의 수익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국세징수활동표를 작성하여 부과 및 징수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중앙관서 및 회계·기금에서 국세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배정을 받은 후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의 지출 시 국고수입(순자산변동표)처리 한다.

③ 국세징수활동표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회수가능세금(국세수익) 중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세금(국고이전지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국(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는 필수보충정보이다.

4 국세징수활동표 표시

- (1)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금액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 (2) 국세징수활동표에서 국세수익에 대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환입은 각 국세수익에 대한 금액을 합산하여 표시한다.

〈 국세징수활동표 구조 〉

			(단위:원)	
구 분	20X2		20X1	
I..국세수익		XXX		XXX
(1) 국세수익발생금액		xxx		xxx
1. 부가가치세수익	xx			
2. 주세수익	xx			
3. 관세수익	xx			
4.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xx			
5. 교육세수익	xx			
6. 농어촌특별세수익	xx			
7. 기타내국세수익	xx			
...	xx			
(2) 대손상각비		(xxx)		(xxx)
(3) 대손충당금환입		xxx		xxx
II..처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가) 총현금수입		xxx		xxx
1. 부가가치세수입	xx		xx	
2. 관세수입	xx		xx	
3. 교통·에너지·환경세수입	xx		xx	
4. 교육세수입	xx		xx	
5. 기타내국세수입	xx		xx	
...	xx		xx	
(나) 국세환급금		(xxx)		(xxx)
(2) 타회계이전		xxx		xxx
(3) 미수국세의 증감		xxx		xxx
(4) 대손충당금의 증감		xxx		xxx
III..차감계 (I-II)		0		0

II. 처분

1. 처분의 정의

‘처분’은 국세징수활동표의 계정과목으로 국세수익 인식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현금 수납액의 국고이전 등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고 이전지출, 타회계이전 및 물납이전 등을 포함한다.

2. 세부 계정과목 설명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처분	국고이전지출	총현금수입	소득세수입
			법인세수입
			부당이득세수입
			상속세수입
			증여세수입
			재평가세수입
			부가가치세수입
			특별소비세수입
			주세수입
			전화세수입
			증권거래세수입
			인지세수입
			관세수입
			방위세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수입
			교육세수입
			농어촌특별세수입
	종합부동산세수입		
	기타내국세수입		
	토지초과이득세수입		
	지방교육양여세수입		
개별소비세수입			
	국세환급금		
타회계이전		농특세이전지출	
		주세이전지출	
		기타타회계이전	
물납이전			
미수국세의 증감			
대손충당금의 증감			

① 국고이전지출(국세징수)

총현금수입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총현금수입

국세수익이 실제로 징수되어 국고금회계로 이전된 금액을 말한다.

(2)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고금회계로부처의 이전받은 금액으로 세액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으로 합쳐서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② 타회계이전

국세수익이 국고금회계가 아닌 타 회계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 농특세이전지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및 관세청에서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농어촌구조개선기업특별회계로 이전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2) 주세이전지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및 관세청에서 징수한 주세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전할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주세법**」에 따라 주세의 100분의 40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 100분의 60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 이전한다.

(3) 기타타회계이전

'농특세이전지출', '주세이전지출' 이외 타 회계로 이전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이다.

③ 물납이전

국세를 물납받는 경우 해당하는 자산은 국세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며 해당 자산을 이전하면서 '물납이전'으로 회계처리 한다.

④ 미수국세의 증감

재정상태표에서 미수국세의 증감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이다.

⑤ 대손충당금의 증감

‘미수국세의 증감’ 계정과목과 같은 성격으로 미수국세 관련된 대손충당금의 내역을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이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국세수익 현금유입액 회계처리

정부는 국세수익으로 유입된 현금을 ‘국고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관세청 등의 국가회계실체는 국세수익의 수납액을 ‘국고이전지출’이라는 계정과목을 통해서 국고금회계로 이전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국고이전지출’의 금액은 현금으로 유입된 국세수익에서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위해 국고금회계로부터 이전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한다.

② 간접세의 인식

국세수익 중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본세에 부가되는 간접세의 경우에도 본세와 동일하게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및 처분으로 인식한다.

③ 국세물납 회계처리

국세를 물납받는 경우 해당하는 자산은 국세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로 이전하게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게 된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해당 자산을 이전하면서 ‘물납이전’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서는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4 국고이전지출과 타회계이전의 차이

국세청, 관세청 등 징수주체를 통하여 국세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처는 징수기관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국고금회계로 해당 수입을 이전시키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국고이전지출'이다. 반면 해당 국세 수입이 타 법률 등에 따라 국고금회계가 아닌 타 중앙관서의 특별회계 등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타회계이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5 미수국세 관련 기말 결산조정 사항

- (1) 국세징수활동을 하는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경우 국세수익의 인식과 대응하여 미수국세가 재정상태표에 인식된다. 재정상태표에는 해당 부처의 재정상태만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세징수활동과 관련한 미수국세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말 결산조정을 통해 당기에 증가 혹은 감소한 미수국세와 대응한 미지급국세를 설정하여 해당 증감효과를 제거하게 된다.
- (2) 미수국세와 관련하여 인식되는 대손충당금의 경우에도 미수국세와 마찬가지로 기말 결산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국세를 설정하여 해당 증감효과를 제거하게 된다.

시점	차변		대변	
	중앙관서 결산조정 시	미수국세의 증감 (국세징수활동표)	xxx	미지급국세 (재정상태표-부채)
	미지급국세 (재정상태표-부채)	xxx	대손충당금의 증감 (국세징수활동표)	xxx

- (3)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 각 중앙관서의 국세징수활동표에 반영되었던 국세수익이 국가재정운영표로 대체되면서 미수국세 및 대손충당금의 증감 금액과 부처 재정상태표에 반영되었던 미지급국세에 대해서 취소시키는 분개가 이루어진다.

시점	차변		대변	
	국가통합 시	미지급국세 (재정상태표-부채)	xxx	미수국세의 증감 (국세징수활동표)
대손충당금의 증감 (국세징수활동표)		xxx	미지급국세 (재정상태표-부채)	xxx

4. 관련법령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삭제 <2006.12.3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후략>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후략>

INDEX

[ㄱ]

<p>가산금수익 189</p> <p>가산세수익 136</p> <p>가지급금 41, 45</p> <p>간행물비 212</p> <p>감가상각누계액 54</p> <p>감가상각방법 240</p> <p>감가상각전입금 195</p> <p>감가상각전출금 196</p> <p>감액손실 23</p> <p>감액손실환입 23, 176, 179, 248</p> <p>건강보험부담비 207</p> <p>건강보험재정부담비 228</p> <p>건강진단비 208</p> <p>건물 52</p> <p>건물감가상각비 239</p> <p>건물수선유지비 236</p> <p>건물임차료 224</p> <p>건설중인공항 61</p> <p>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 61</p> <p>건설중인댐 61</p> <p>건설중인도로(고속도로) 60</p> <p>건설중인도로(국도) 60</p> <p>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60</p> <p>건설중인상하수도 61</p> <p>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54</p> <p>건설중인철도 60</p> <p>건설중이하천 61</p> <p>건설중인항만 61</p> <p>검정및시험수수료 224</p> <p>견본비 212</p> <p>정상적 수선유지비 237</p> <p>경조금 208</p> <p>계류장 66</p> <p>고속도로 58, 61</p> <p>고속도로감가상각누계액 58</p>	<p>고속도로사용수익권 58</p> <p>고속도로수선유지비 236</p> <p>고용보험부담비 207</p> <p>고용보험비용 232</p> <p>고용보험수익 191</p> <p>고용주부담금 163, 166, 191</p> <p>공고료및광고료 212</p> <p>공공기관출연비 228</p> <p>공공요금 217</p> <p>공무원연금부담비 207</p> <p>공무원연금비용 233</p> <p>공무원연금수익 163</p> <p>공정가액 22, 172, 245, 251</p> <p>공정가액위험회피 146</p> <p>공채 19</p> <p>공채이자비용 242</p> <p>공채이자수익 169, 170</p> <p>공탁 48, 85</p> <p>공항 59, 63, 66</p> <p>공항감가상각누계액 59</p> <p>공항감가상각비 239</p> <p>공항사용수익권 59</p> <p>공항수선유지비 236</p> <p>과오지급금회수금 178</p> <p>관리용역비 215</p> <p>관리운영비 201</p> <p>관리토지취득비 78, 253</p> <p>교수보직경비 206</p> <p>교환수익 152, 176, 178</p> <p>구료비 229</p> <p>구상이익 176, 178</p> <p>구상채권 41, 44</p> <p>구상채권대손충당금 41, 45</p> <p>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41, 45</p> <p>구조조정기금채권 94</p> <p>건축물 52</p> <p>건축물감가상각비 239</p> <p>건축물수선유지비 236</p> <p>국가기여금 163, 164, 165</p> <p>국가부담금 163, 164, 166</p> <p>국가채권관리법 9</p> <p>국고금 10, 11, 14</p> <p>국고금여유자금운용 17, 19</p> <p>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10, 12, 13</p> <p>국고금통합관리 153</p>
--	--

국고예금	10, 12, 15	기타공공기관보조비	229
국고이전지출(국세징수)	265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169
국고채권	94	기타무상이전수입	195
국고채무부담행위	109	기타무형자산	75
국고채당금	44, 85	기타민간보조비	229
국내교육비는	215	기타민간예수금이자비용	243
국내여비	220	기타보수	206
국내차입금이자비용	242	기타보전비	228
국도	58, 61, 67	기타비교환수익	192
국도감가상각누계액	58	기타사회기반시설	59, 63
국도사용수익권	58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60
국도수선유지비	236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239
국립공원	80, 82	기타사회기반시설사용수익권	60
국립학교운영비	220	기타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236
국민연금부담비	207	기타수당	206
국민연금비용	233	기타수수료	224
국민연금수익	163, 164	기타용역비	216
국민주택채권	94	기타유동자산	41, 47
국세수익	185, 258	기타의기타복리후생비	208
국세징수활동	257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84
국세징수활동표	257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	60, 64
국세환급금	185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사용수익권	60
국외교육비	215	기타의기타유동자산	45
국외여비	220	기타의기타이자비용	243
국유재산법	8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54
국채	19	기타의기타투자자산	49
국채물가연동손실	254	기타의미수금	27, 31, 180
국채물가연동이익	176, 181	기타의보상비	227
국채수익률	32, 94, 99	기타의선급비용	41, 43
국채이자비용	242	기타의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239
국채이자수익	169, 170	기타의저장품	41, 42
군인연금부담비	207	기타이자수익	169, 170
군인연금비용	233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236
군인연금수익	163, 164	기타자산	84, 86
금고은행국가예금	10, 11	기타자산감액손실	249
금융리스	55	기타자산임차료	224
금융리스이자비용	243	기타재원이전	197
급량비	218	기타재원조달	196
기계장치	52	기타지급보증금	41, 44
기계장치감가상각비	239	기타지분증권	20
기계장치및부품비	212	기타투자자산	49
기계장치수선유지비	236	기타투자증권이자수익	169, 170
기금전입금	195	기타특별회계전출금	196
기금전출금	196	기타평가이익	172
기준환율	13, 47, 117, 173, 247	기타현금성자산	10, 12
기타 단기투자증권	20		

[ㄴ]

납입자본	198
납입자본금	144
내부개발소프트웨어	75
내부거래	166, 195, 198
내부거래제거	198
내부교육비	215
내용연수	239
농특세이전지출	265

[ㄷ]

단기투자증권	19
당기순이익전입금	195
당기순이익전출금	196
당좌예금	10, 11
대손상각비	185, 241
대손실적률법	34
대손예상액	32, 185, 261
대손추산액	32, 45, 86, 177, 241
대손충당금	28, 41, 45, 84, 177, 241, 261
대손충당금 평가방법	33
대손충당금의 증감	266
대손충당금환입	34, 176, 177, 180, 241, 260
대여금	35
대지급금	41, 44
댐	59, 62, 63, 70
댐감가상각누계액	59
댐감가상각비	239
댐사용수익권	59
댐수선유지비	236
도로	8, 57, 61, 66, 67
도로감가상각누계액	58
도로감가상각비	239
도로사용수익권	58
등기료법정수수료	224
등대	66

[ㄹ]

매매목적	246
매입부대비용	46
명목가액	32, 45, 112, 115
모임지원비	208
몰수금수익	189
무상이전수입	198
무형자산감가상각비	239
문화재	79
문화재보호법	79, 80, 81
물납이전	265
물품관리법	9
미수국세	27, 110, 185, 261
미수국세대손충당금	186
미수국세의 증감	266
미수금	33, 180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27, 31
미수기타수익	27, 31
미수기타이자수익	27, 31
미수대여금이자수익	27, 31
미수보증수익	27, 31
미수보험수익	27, 31
미수부담금수익	27, 30
미수사회보험수익	27, 30
미수수익	12, 30, 33, 171
미수연금수익	27, 30, 164
미수이자수익	27, 3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27, 30
미수채권	27, 30, 41, 172, 187, 241
미수채권이자수익	27, 31
미실현보유손익	145
미지급국세	110, 267
미착품	41, 42
민간출연비	228

[ㄺ]

발생주의	3
배당금수익	176, 177, 180
배상비	227
벌금수익	189

법인세비용	253	산업재산권	74
법인세환급금	178, 180	산재보험부담비	207
변상금수익	189	산재보험비용	232
보관비	224	산재보험수익	191
보증보조비용	233	상각후취득원가	22
보증수익	27, 167, 176	상수도사용수익권	60
보철구지급금	227	상여금	206
보통예금	10	상품	41, 42
보험비용	233	상하수도	59
보험수익	167, 176, 191	상하수도감가상각누계액	60
보험차익	180	상하수도수선유지비	236
보호구역	79	상하차비	224
복식부기	3	선급금	41, 43
부가세대급금	41, 43	선급법인세	41, 44
부과고지시점	190	선급비용	41, 43, 46
부담금수익	187, 188	선급이자비용	41, 4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132	선도거래	145
부상치료비	227	선물거래	145
부재료	41, 42	선물대	208
비교환수익	130, 140, 144, 165	선박맞항공기	53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196	선입선출법	46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196	소구채권	44
비배분비용	201	소모성군수품	41, 43
비배분수익	146, 152, 153	소모성물품비	212
비용	201	소액자산	55, 76
		소프트웨어	75
		손익계정전입금	195
		손익계정전출금	196
		송금수수료	224
		수당	206
		수도료	218
		수수료수익	160, 161
		수익	151
		수익사업이익전입금	157
		수익적지출	237
		수입대체경비수입	152, 161
		스왑거래	146
		시상금	207
		시험연구비	214
		시험연구재료비	215
		신용보증사업	167
		신종기업어음	16
		신탁사업손실	253
		신탁사업수익권	49
		신탁사업이익	176, 178

[八]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보조비	22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조비	166, 228		
사무용기기	53		
사무용집기	53		
사무용품비	212		
사업형회계	201		
사용료수익	160		
사용수익권	54		
사용제한	12		
사학연금부담비	207		
사학연금비용	233		
사학연금수익	164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	249		
사회보장수혜금	227		
사회보험사업	167, 191		
사회보험수익	191		

[ㅇ]

양도성예금증서	16
어음관리구좌	16
업무대행수수료	223
여객터미널	66
연구개발비	75
연구개발용역비	215
연구용역비	215
연금수익	164, 176
연령분석법	34
연료비	218
영업보증금	4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94
오류수정	127
오물수거료	218
옵션거래	146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4
외주가공비	224
외화미수채권	34
외화평가손실	245
외화평가이익	172
외환차손	252
외환차익	176, 177
용역제공수익	29, 157, 161, 204
용역제공원가	204
운반건설기계및차량	53
운송비	224
운용리스료	225
원재료	42
월정액여비	206
월정직책급	206
위약금수익	189
위탁사업비	216
위험회피	246
유동성대체	34, 87, 92, 98, 115
유류비	217
유산자산수선유지비	78, 237
유산자산취득비	78, 253
유효이자율	23, 32, 37, 94, 99
융자금	36
융자보조비용	233
의료용품비	212
이동성기계장치	52

이자비용	244
이자수익	171
이주보상비	227
이차보전비용	233
인쇄비	211
일반업무비	221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249
일반회계전입금	195
일반회계전출금	196
일숙직비	207
임도	66
임시직보수	206
임차보증금	44
입목	52

[ㅈ]

자기공채	19
자기국채	19
자본계정전입금	195
자본계정전출금	196
자본적지출	237
자산관리계좌	16
자산기부	253
자산재평가손실	245
자산재평가손실환입	146, 176, 179
자산처분손실	250
자산처분이익	153, 174
자산폐기손실	253
자연공원법	79, 82
자연환경보호법	79
자치단체보조비	229
잔존가액	240
잡손실	254
잡이익	180
장기구상채권	85
장기구상채권대손충당금	86
장기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86
장기기타의미수금	31
장기기타의선급비용	85
장기기타이자수익	28
장기기타지급보증금	85
장기대지급금	86
장기미수국세	30

장기미수기타수익	31	정부내자산수증	195
장기미수대여금이자수익	29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243
장기미수보증수익	31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	169, 170
장기미수보험수익	31	정부외기부금	195
장기미수부담금수익	30	정부외융자금이자수익	169, 170
장기미수사회보험수익	30	정부외자산수증	195
장기미수연금수익	30	정부외전대차관이자수익	169, 170
장기미수이자수익	31	정액급여	206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30	정액수당	206
장기미수제재금수익	30	제세	217
장기미수채권	8, 30, 33, 84	제재금수익	189, 190
장기미수채권이자수익	28, 31	제품	41, 42
장기선급금	84	주세이전지출	265
장기선급비용	47, 84	주식	20
장기선급이자비용	85	중소기업진흥채권	94
장기입차보증금	84, 85	지급보증금	41, 44
장기지급보증금	85	지급보험료	223
장기투자증권	19	지급의료비	224
장부가액	145, 172, 245, 2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0
장학금및학자금	227	지방재정교부금	230
재고자산	41, 42	지방채	20
재공품	41, 42	지방채이자수익	169, 170
재무계정과목	4	지분증권	20
재무제표	3	지상권, 전세권	75
재정증권이자비용	242	진행기준	159
재해보상비	208	집기·비품·차량운반구	52
재해복구지원비	228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236
재해손실	254		
재화판매수익	157, 158, 161, 204		
재화판매원가	204		
저장품	41, 43		
전기과오납금반환금	254	차액보상금	229
전기료	218	채권잔액비례법	34
전기오류수정손실	254	채무면제이익	193
전기정수결의착오정정	254	채무상환손실	253
전비품	53	채무상환이익	177
전비품감가상각비	239	채무증권	19
전비품수선유지비	23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61, 195, 198
전신전화가입권	84, 85, 87	처분손익	175, 251
정기예금이자수익	169	처분시점	175, 251
정기적금이자수익	169	철도	58, 62, 67, 68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243	철도감가상각누계액	58
정부내예탁금	36	철도감가상각비	239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169, 170	철도사용수익권	58
정부내자산기부	197	철도수선유지비	236

[大]

축산물	41, 42
출자금	20
충당금법	32
충당금환입	177
충당부채환입	176, 177
취득원가	22

[E]

타회계이전	265
토지	52
토지임차료	224
통화	10
통화대용증권	10, 11
퇴직급여	206
퇴직급여충당부채	206
투자증권감액손실	248
투자회원권	49
특근매식비	207
특별회계전입금	195
특정업무비	221
특허권	74

[F]

파생상품	145
파생상품거래손실	252
파생상품거래이익	176, 177
파생상품자산	41, 42, 46, 49
파생상품평가손실	245
파생상품평가이익	144, 172
포상금	228
포장비	224
프로그램수익	152, 153, 202
프로그램충원가	201
피고용자기여금	165, 166, 191
피복비	218
필수보충정보	79

[G]

하천	59, 63, 66, 70, 71
하천감가상각누계액	60
하천사용수익권	60
하천수선유지비	236
한국은행국가예금	10, 11
항만	58, 62, 66, 69
항만감가상각누계액	59
항만감가상각비	239
항만사용수익권	59
항만수선유지비	236
해외보조비	230
해외차입금이자비용	243
해외출연비	228
행사진행경비	220
행정형회계	201
행정활동	50
현금	10, 11
현금등가물	10, 11
현금성자산	10, 11, 12, 41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146
현재가치	45, 120
현재가치평가	33, 86
현재가치할인차금	27, 41, 45, 84, 171
홍보물품비	212
화물터미널	66, 69
화폐성	245
화폐성외화부채	173, 245, 247, 252
화폐성외화자산	173, 245, 247, 25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2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21
환급금	253
환매조건부채권	16
환산기준	247
활주로	66
회계실체	190
회계추정	128
회사채	20
회사채이자수익	169, 170